『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 찰 청

<차 례>

Ⅰ. 통계개요 ····· 1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4

Ⅲ. 통계설계 ····· 6

Ⅳ. 자료수집 ····· 60

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 64

Ⅵ. 자료처리 ····· 65

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 79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 92

Ⅸ. 통계기반 및 개선 ····· 95

Ⅹ. 참고문헌 ····· 97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경찰청 소관의 국내의 도로교통법 제2종에 규정된 도로 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에 접수 처리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설명한 것이며,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통계에 이용되는 개념과 통계개요, 자료수집 체계, 통계 공표일자 등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승인번호 13202호)

2. 법적근거

○ 승인번호 : 제13202호(1976.11.30.)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통계

3. 작성방법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교통사고처리 자료를 근거로 작성

○ 교통사고접수 → 교통사고조사(경찰서)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각 항목별 입력) → 경찰청(관리)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경찰청 / 교통국 / 교통안전과 / 교통조사계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1.1.~12.31.)

○ 공표주기 : 익년 3월(언론)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공표 시기

- 언론공개 : 3월(전년도 통계 마감된 1.1.~12.31. 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 게재 : 4월(중용항목 15개), 7월(교통사고 통계책자 pdf 파일)
- 산하기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게재 : 6월초
- 기타 홈페이지 : e나라지료 4월, 코시스 6월 등

□ 공표 범위

- 지역 : 경찰청 각 국·관 및 지방경찰청, 교통유관기관, 언론사, 중앙부처, 중앙도서관 등
- 내용 : 교통사고 건수, 사망사고조사0, 사망자와 부상자,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교통사고 현황, 자치단체별 교통사고 현황 등

7. 통계연혁

□ 주요연혁

○ 1976. 11. 30. : 신규통계작성 승인

○ 1992. 5. 12.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치안본부가 독립중앙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승인번호 변경

○ 1993. 11. 12. : 공표협의 면제(면제기간 : ’94. 1. 1. ~ ’95. 12. 31.)

○ 1993. 11. 27. : 승인번호 체계의 변경(인구총조사 외 361종 승인번호 변경)

- 승인번호 체계 ○○○○○

1. 첫 번째 자리 : 기관구분
2. 두세번째 자리 : 기관 고유번호
3. 네다섯째 자리 : 승인통계 일련번호(1회한 통계 제외)

○ 1995. 12. 5. : 공표협의 면제(면제기간 : ’96. 1. 1. ~ ’97. 12. 31.)

○ 2001. 11. 14. : 통계명칭 및 작성주기 변경

- 통계명칭 : 교통사고 발생상황
- 작성주기 : 년
- 변경사유 : oecd 회원 가입국의 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사망자 기준을 72시간에서 30일까지로 변경(2000.1.1.부터) 하여 통계 작성 후 연단위로 공표, 작성주기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 2007. 5. 30. : 교통사고 발생통계 결과 공표협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 2009. 4. 5. : 보고서식(교통사고 통계원표) 및 공표서식 변경

- 통계원표 번호 수정, 통계원표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추가
- 공표서식(교통사고 통계 책자)에 항목 추가(5종)

※ 2005년 통계원표 개정으로 65개로 변경, 2012년 통계원표 개정 : 68개 항목(3개 추가), 2017년 통계원표 개정(68개→60개 항목, 삭제 8개 항목, 개정 3개)

○ 2014. 7. 17. : 통계명칭 변경

- 통계명칭 :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에서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으로 변경
-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3202호(1976.11.30.)
-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4. 7. 17.
- 변경사유 : 경찰에 ‘접수·처리된 사고건수’를 통계용어상 ‘발생건수’로 상용할 경우 경찰통계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 통계라는 오인을 야기
- 통계항목 : 발생(건) → 사고건수

※ 주석에 ‘경찰에서 접수·처리하는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라고 명기

- 통계청 고시 : 제2014-208호(2014.7.21.)

□ 통계 작성 과정

- 대상객체 : 경찰에 신고 되는 인적피해 교통사고

- 조사범위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 교통사고 처리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방법 : 교통사고조사보고서(교통사고 통계원표)를 집계
- 조사체계 :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전산 입력
- 조사기간 : 1년(1.1.~12.31.)
- 조사시점 : 익년 3월 통계원표 마감 후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 작성목적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교통사고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말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사고통계의 이용자

기관분류	기관명	통계 사용용도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회, 질병관리본부 등	◦ 국가 교통안전 정책 수립 ◦ 교통안전 관리실태 점검
유관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현대해상 등	◦ 각종 교통안전 관련 연구 ◦ 상품 및 시스템 개발
지자체	◦ 서울시, 광주시,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 남양주시, 미추홀구,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	◦ 교통안전시행계획 작성 ◦ 교통안전교육 교재 제작
경찰	◦ 경찰청, 서울지방청, 광주지방청 등	◦ 교통사고 예방 및 CCTV카메라 사업 확장 등 사업 추진
학계	◦ 전남대, KAIST, 충남대, 서울여대 등	◦ 논문 작성 및 교통안전 관련 연구자료에 활용 등
언론사	◦ KBS, MBC, SBS, MBN, jtbc 등 ◦ 경인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 보도기사 작성 ◦ 뉴스 및 TV 프로그램 보도시 사고통계자료 활용
민간	◦ 공공데이터 및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개인의 자료 요청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콘테스트 등 공모전 참가, 연구 등

3. 이용자 의견수렴

□ 교통사고 통계원표 개정(2017년)

○ 배 경

- 행안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중 ‘교통사고 통계 품질개

선 사업’이 선정

1. 통계원표 개정
2. 통계품질진단 개선
3. 전자지도 활용
4. 교통사고 좌표수집

-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의견 수렴으로 개정

○ 주요 변경사항

- 2017년 이전 통계원표 68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변경
- 교통환경 변화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24개)
- 불명확한 입력 기준 통합·수정(32개) 및 부적합 항목 삭제(3개) 등 간소화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교통사고통계의 정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것을 말함(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 교통사고 통계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사고 중 경찰에 신고 접수처리된 사고를 근거로 산출

□ 교통사고계원표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등에 대한 국제비교

구분 (대분류)	연번	항목(국내)	미국 (FARS)	영국 (STATS19)	EU (CADaS)
교통사고 개요	1	발생일시	○	○	○
	2	요일	X	X	X
	3	발생시군구	○	○	X
	4	주거지시군구	○	○	X
	5	발생위치(좌표)	○	○	○
	6	발생경찰서	X	○	X
	7	주야	X	○	X
	8	사고내용	X	○	○
	9	사망자수	X	○	X
	10	중상자수	X	○	X
	11	경상자수	X	○	X
	12	부상신고자수	X	X	X
	13	사고유형	X	X	○
	14	사고유발요인	X	○	X
	15	특수사고-뺑소니	○	○	○
		특수사고-역주행	X	X	X
		특수사고-긴급자동차	X	○	X
		특수사고-개문발차	X	○	X
		특수사고-군용차	X	X	X
		도로 내 동물사고			
		대리운전			
		전기자동차			
	16	관련차량대수	○	○	○
교통사고 당사자	17	성별	○	○	X
	18	연령	○	○	X
	19	국적	○	○	○
	20	주민등록번호	X	X	○
	21	학생사고	X	X	X
	22	운전면허번호	X	X	X
	23	운전면허종류	○	X	X
	24	면허경과연수	X	X	○
	25	음주운전	○	○	○
	26	음주운전 행정처분 횟수	○	X	X
	27	보호장구 착용여부	○	○	○
	28	법규위반내용	○	○	X
	29	행동유형	○	○	○
	30	사고직전속도	○	X	X

	31	신체상해정도	○	○	○
	32	신체상해주부위	X	X	○
	33		○	X	○
관련차량	34	차량등록번호	○	○	X
	35	차명	○	X	○
	36	제작사	○	X	○
	37	연식	○	X	○
	38	당사자종별	○	○	○
	39	보험가입상황	X	X	○
	40	차량용도	X	X	○
도로 및 환경	41	도로종류	○	○	○
	42	노선번호	○	○	○
	43	도로형태	○	○	○
	44	교차로 형태	○	○	○
	45	특정도로-자동차전용도로	X	○	X
		특정도로-버스전용차로	X	○	X
		특정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X	X	X
		특정도로-자전거도로	X	○	○
		특정도로-가변차로	X	○	X
		특정도로-하이패스차로	X	X	X
		특정도로-일방통행도로	X	○	○
		특정도로-어린이보호구역	X	X	X
		특정도로-노인보호구역	X	X	X
		특정도로-장애인보호구역	X	X	X
	46	성별	○	○	X
	47	연령	X	X	X
	48	주민등록번호	○	○	○
	49	직업	○	○	○
	50	신체상해정도	○	○	○
	51	당사자종별	○	○	○
	52	사고시 상태	X	X	○
	53	보호장구 착용여부	X	X	X
	54	신체상해주부위	○	○	○
	55	신체가해 차량부위	○	○	○
	56	고속도로 도로위치	X	○	X
기타 피해자 (피해자별 작성)	57	성별	○	○	X
	58	연령	○	○	X
	59	주민등록번호	X	X	○
	60	직업	X	X	X
	61	신체상해정도	○	○	○
	62	당사자종별	X	○	○
	63	사고시 상태	○	○	○
	64	보호장구 착용여부	○	○	○
	65	신체상해주부위	X	X	○
	66	신체가해 차량부위	X	X	○

1-2. 적용 분류체계

□ 교통사고 개요

▪ 교통사고 관련 기본 정보를 포함한다.

○ 발생일시	○ 노면상태
○ 주야	○ 사고내용
○ 요일	○ 관련차량대수
○ 발생시군구	○ 사고유형
○ 발생경찰서	○ 사고원인 세부상태
○ 발생위치좌표	○ 특수사고
○ 기상상태	

① 발생일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연월일과 24시제[1] 시각

② 주야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주야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주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말함[2]
야	일몰에서 일출까지를 말함

③ 요일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발생 요일

④ 발생 시군구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시(구)또는 군에 대한「시(구)군 코드[3]」

⑤ 발생 경찰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에 대한「경찰서 등 코드[4]」

⑥ 발생위치좌표

---

1) 24시에 대해서는 23:59, 00:01로 입력한다.

2) 일출, 일몰 시각은 기상청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시(구)군 등의 합병으로 인하여 「시(구)군 코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에는 종전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코드를 사용한다. 또한 「시(구)군 코드」가 개정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지를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개정 건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연도는 기존의 코드를 사용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코드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경찰서코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GIS시스템 상 횡좌표 및 종좌표

⑦ 기상상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사고 장소의 기상 상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맑음	구름이 대략 80% 미만 낀 상태로 다른 기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흐림	구름이 대략 80% 이상 낀 상태로 다른 기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	비가 오고 있는 상태
안개	매우 작은 물방울 또는 연기 등이 지면 가까이를 덮고 있어서 그 시야가 대략 2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 상태
눈	눈, 진눈깨비, 우박이 오고 있는 상태
기타	상기 상태 이외의 기상상태

⑧ 노면상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발생 도로의 표면 상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포장도로	도로의 표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굳혀진 도로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이외의 도로
건조	도로의 표면이 말라있는 상태
젖음/습기	도로의 표면이 물 등으로 젖어 있는(습기가 차있는) 상태(예, 진흙길(비포장도로) 등)
침수	도로의 표면에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있는 상태로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노면상태
적설	도로의 표면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
해빙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질퍽거리는 상태
서리/결빙	도로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
기타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름의 유출, 유리 및 모래의 비산 등)이거나 차량단독사고로 운전자의 사망 및 의식불명 또는 뺑소니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사망 등으로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

⑨ 사고내용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사상자 종별 구분 및 종별 각각의 사상자수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사망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상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경상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신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⑩ 관련차량대수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총 대수

⑪ 사고유형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제1당사자, 제2당사자가 어떠한 행동 관계로서 또는 어떠한 사고유발 행위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가를 분류(하단 그림 설명 참조)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차대사람		보행자가 제1당사자 또는 제2당사자가 된 사고(열차가 상대방일 경우 제외)의 경우를 말하며, 보행자의 행동에 따라 사고유형을 세분화
차대사람	횡단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5]하고 있었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도통행중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 또는 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보행자가 길가장자리구역[6]을 통행 또는 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도통행중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 또는 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차대사람 사고 중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대차		제1당사자와 제2당사자가 모두 차량인 사고(열차가 상대방일 경우 제외)를 말하며, 양자의 행동관계를 판단해서 사고의 유형을 세분화
차대차	정면충돌	대면 방향으로부터 진행해온 차량과 정면 충돌한 상태
	측면충돌	차량 정면 부위와 타차량 측면 부위가 서로 충돌한 경우
	후진중충돌	후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로 두 차량 모두 후진 중이었을 경우도 포함
	추돌	두 차량이 동일 방향을 향해서 진행 중이거나 앞차가 신호대기 중, 승객 대기 중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언제라도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을 경우) 중인 차량 간에 있어서 앞차의 후면부에 뒤차의 전면부가 충돌한 경우
	기타	차대차 사고 중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량단독		제2당사자가 없거나 물건인 경우를 말하며, 제2당사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
차량단독	전도	차량이 도로상에서 공작물에 충돌하지 않고 조향휠 급조작, 급제동, 노면 결함 등의 이유로 인하여 차량 측면이 도로에 접한 상태
	전복	차량이 도로상에서 공작물에 충돌하지 않고 조향휠 급조작, 급제동, 노면 결함 등의 이유로 인하여 차량이 뒤집어진 경우
	공작물충돌	도로상 또는 도로와 밀접해서 설치되어 있는 물건(전주, 가로수, 표지, 건물, 담장, 교량, 교각, 분리대, 방호벽, 동물사체, 기타 공작물)에 차량이 충돌한 경우

	주 · 정차 차량충돌		운전자(승객은 관계없음)가 승차하고 있지 않은 노상 주 · 정차 중의 차량(물건으로 간주)과 충돌한 경우
	도로 이탈 7)	추락	벼랑 밑, 강변 밑, 도랑, 전답 등 도로 외의 낮은 부분으로 굴렀거나 떨어진 것을 말하며, 차체의 일부 또는 인체만이 떨어진 경우도 이에 포함
		기타 이탈	추락 이외의 상태로서 도로 밖으로 벗어나 주행한 것을 말하며, 도로와 접촉하는 보도, 공터 등으로 들어간 경우
	운전자 부재중 사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승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어 중립 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안 채운 상태로 하차한 후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기타		차량단독 사고 중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발차, 급정거 등으로 인한 탑승자의 차내사고, 탑승자 추락사고 등
철길건널목			열차가 당사자로 된 사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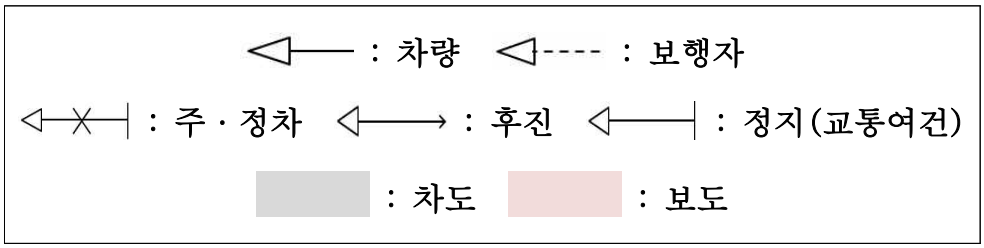

<그림 11.01> 차대사람-횡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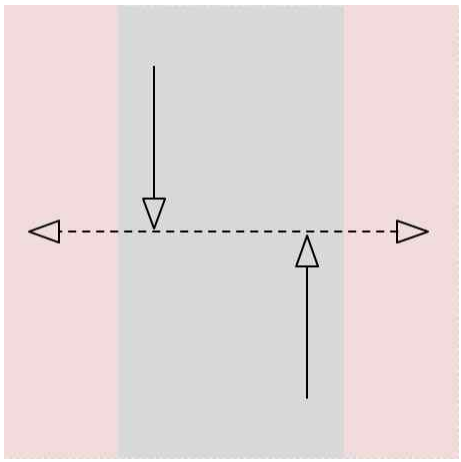

<그림 11.02>
차대사람-차도통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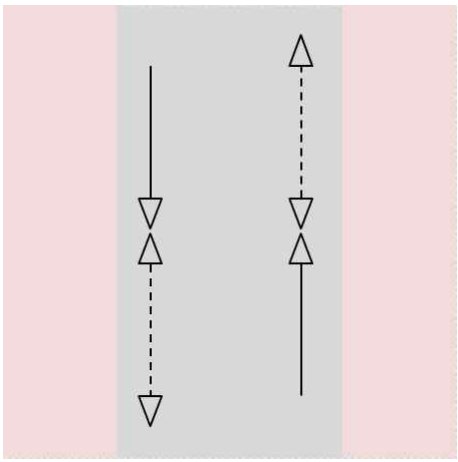

5) 도로 가장자리구역에서 도로 부분을 통행하여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하며, 횡단 도중 되돌아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차도의 외측선에 의해서 구분되며, 차도 외측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외측단으로부터 약 1미터 이내의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량이 도로상 또는 도로 가장자리의 공작물에 충돌하지 않고 도로 밖(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 외)으로 벗어나 주행하는 것

<그림 11.03>
차대사람-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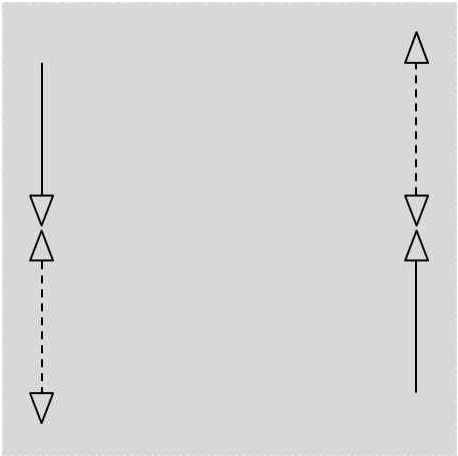

<그림 11.04>
차대사람-보도통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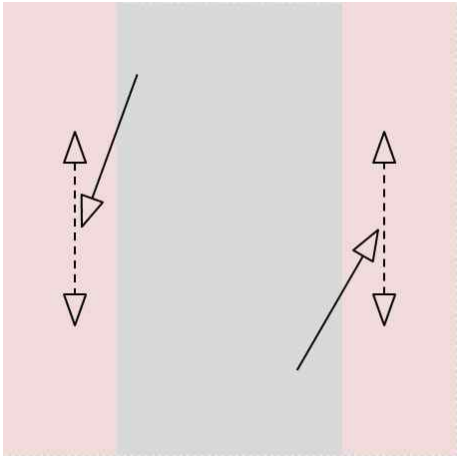

<그림 11.06> 차대차-정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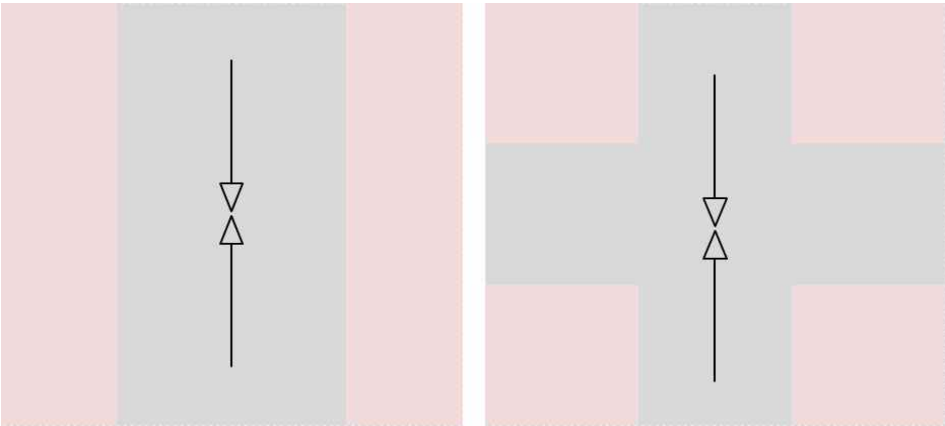

<그림 11.07> 차대차-측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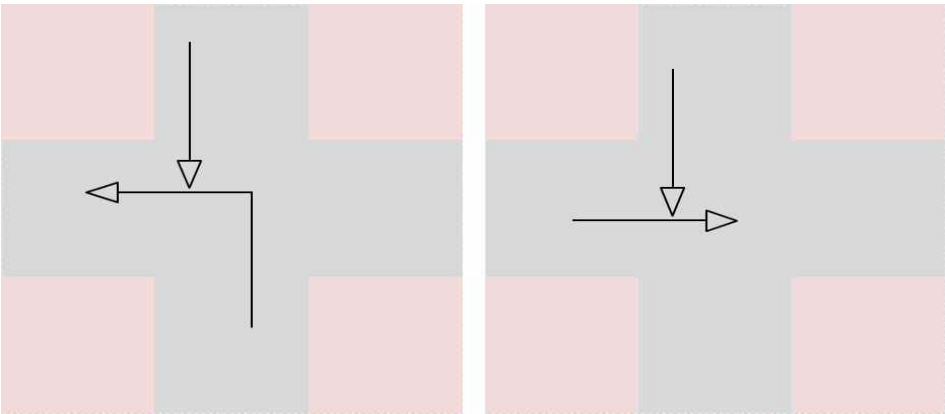

<그림 11.09> 차대차-추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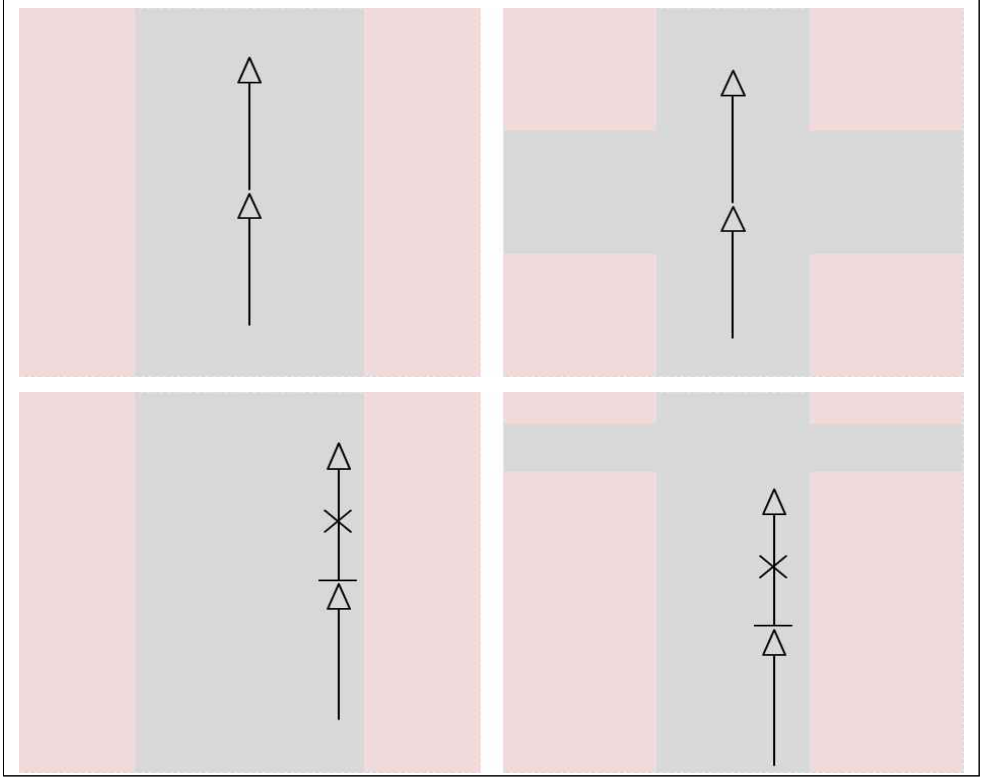

<그림 11.11> 차량단독-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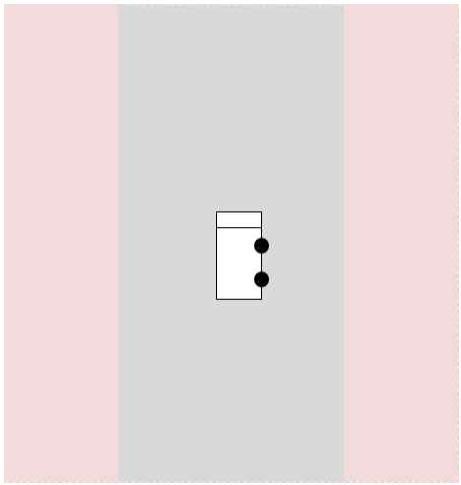

<그림 11.12> 차량단독-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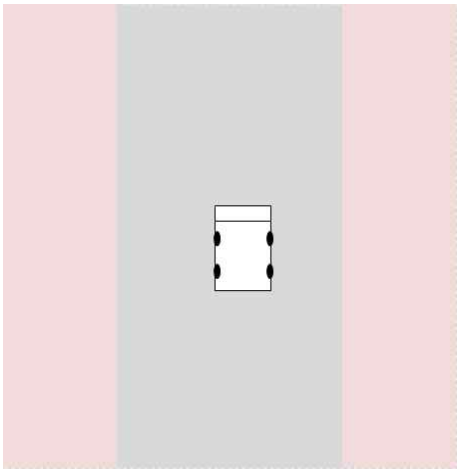

<그림 11.13>
차량단독-공작물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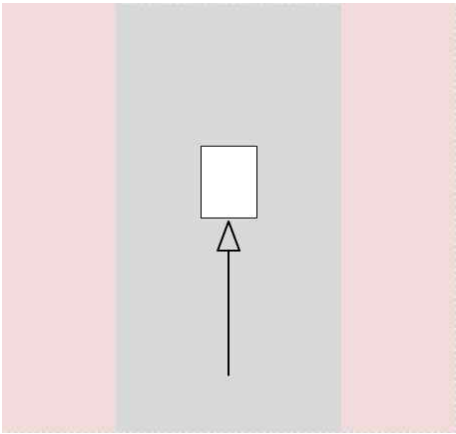

<그림 11.14> 차량단독-주 · 정차차량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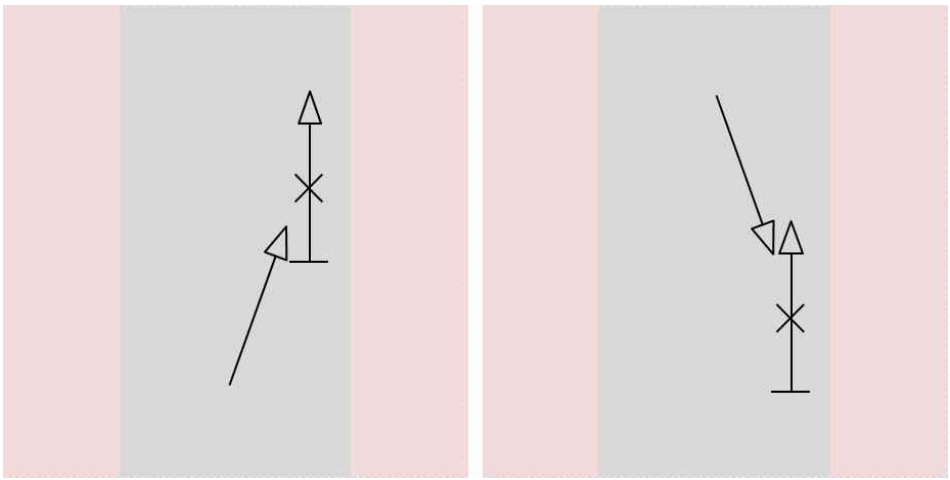

<그림 11.15>
차량단독-도로이탈-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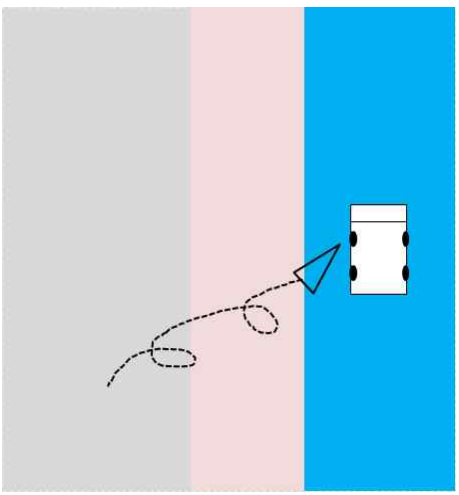

<그림 11.16>
차량단독-도로이탈-기타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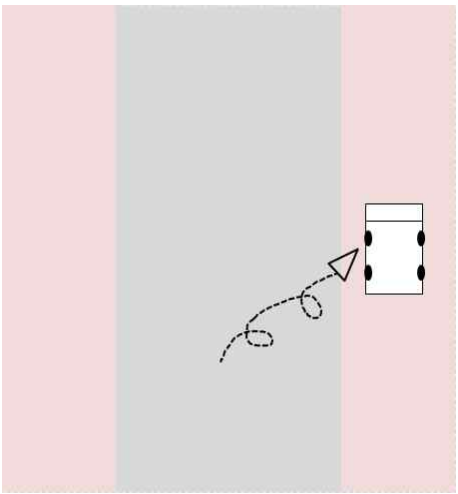

⑫ 사고원인 세부상태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의 발생원인 중 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유형 및 세부상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인적 상태	운전자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의분산, 인지판단 착오 및 행동상 문제 등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등 포함)
	보행자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의분산, 인지판단착오 및 행동상 문제 등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적상태		차량 기기장치 및 부품 등의 불량 및 차량화재 등 차량적 상태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환경적 상태		시계불량 및 도로장애 등 도로환경적 상태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인적상태-운전자 상태

구 분		설 명
졸음 및 약물 등	졸음	운전자가 졸음으로 인해 운전 중 눈을 감아 시야가 전체 또는 부분 차폐된 상태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로 및 피로	운전자가 과로 및 피로로 인해 운전 중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행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알코올 등 약물영향	운전자가 알코올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행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음주의 경우, 단속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경우)
주의 분산	전화통화	운전자가 전화기 또는 핸즈프리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통화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기기 조작 또는 주시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포함, 태블릿 PC 등)를 조작하거나 혹은 주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심, 딴생각	별도의 외적 주의분산 상태 없이 운전자가 방심하거나 운전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느라 주의를 빼앗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주의분산	운전자가 주행 중 차량 내 내비게이션(DMB 포함), 카오디오, 공조장치 등 운전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차량 내 편의장치를 조작하거나 음식섭취, 동승자 대화, 흡연 등 기타 주의분산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지 판단 착오	교통상황 판단착오	운전자가 도로상황 및 다른 차량(또는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속도를 잘못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리미숙	운전자가 주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판단지연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운전 행태	차량조작 미숙	운전자의 운전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조작(조향 및 가감속, 변속 등) 미숙 또는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급조작	돌발적인 도로교통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급가속, 급감속 및 조향휠 과대조작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기타	기타 운전자 상태	상기 운전자 상태 이외의 기타 운전자 상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없음	없음	운전자 상태 없음
불명	불명	차량도주 등으로 인해서 운전자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 인적상태-보행자 상태

구 분		설 명
약물 등	알코올 등 약물 영향	보행자가 주취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 분산	음향기기 청취	보행자가 이어폰, 헤드폰 등 청각자극을 차폐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통화	보행자가 휴대전화 또는 핸즈프리 통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보행 중 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기기 조작 또는 시청	보행자가 보행 중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포함, 휴대용 게임기, 태블릿 PC 등)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방심, 딴생각	보행자가 별도의 외적 주의분산 상태 없이 방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느라 주의를 빼앗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반자 대화	보행자가 동반자와 대화를 하면서 보행하던 중 주의를 빼앗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지 판단 착오	교통상황 판단착오	보행자가 주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속도 판단착오, 교통신호, 교통표지나 노면표지 등 교통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동상 문제	노상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음	보행자가 도로 위에 앉아있거나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자기 뛰어듬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기타 보행자 상태	상기 보행자 상태 이외의 기타 보행자 상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없음	없음	보행자 상태 없음
불명	불명	보행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보행자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 차량적 상태

구 분	설 명
차량 기기장치 불량	차량 제동장치, 조향장치, 엔진장치 등의 고장이나 점검,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 파손	차량 타이어 펑크, 타이어내 공기압 이상 등 타이어 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화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지원시스템 불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고장, 오작동 등 운전지원시스템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차량상태 불량	상기 차량상태 이외의 기타 차량적 상태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없음	차량적 상태 없음
불명	차량도주 등으로 차량적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 도로환경적 상태

구 분		설 명
시계 불량	조명 불량	터널 및 야간주행 시, 조명장치의 결함 및 성능 부족 등으로 인한 운전자 시계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변 장애물	도로변 장애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계가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날씨(눈, 비, 안개 등)	눈, 비, 안개, 미세먼지 등 날씨에 의해 운전자의 시계가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시계불량	상기 도로교통환경의 시계불량 외에 대항차량 전조등 현혹 등 기타 시계불량 상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장애	노면 미끄러움 (비, 결빙, 적설 등)	비, 결빙, 적설 등 자연현상 또는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면 파손	포트 홀, 노면 파손, 물웅덩이 등 도로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도로장애	상기 도로장애 이외의 기타 도로장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기타 도로환경적 원인	상기 도로환경적 상태 이외의 기타 도로환경적 원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없음	없음	도로환경적 상태 없음
불명	불명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고 당시 도로 및 보도가 훼손되어 도로환경적 상태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⑬ 특수사고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특수사고 유형 구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뺑소니	교통사고 시에 사고당사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역주행	해당사고 운전자가 역주행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개문발차	차량 등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 등이 움직여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긴급자동차[8]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군용차	군소속의 자동차로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나 열차 및 탱크, 장갑차 등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도로 내 동물사고	도로상 이동 중이거나 정지 상태의 동물에 차량이 충돌한 경우 (단, 동물 사체와의 충돌은 포함하지 않음)
대리운전	대리운전 기사[9]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전기자동차	해당사고 운전자 차량 중 전기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8)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참고

□ 교통사고 당사자

▪ 교통사고 제1당사자 및 제2당사자의 인적 정보를 포함한다.

○ 국적	○ 보호장구 착용여부
○ 주거지 시군구	○ 신체상해정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고직전속도
○ 성별	○ 음주측정수치
○ 연령	○ 음주운전 횟수
○ 학생사고	○ 법규위반내용
○ 운전면허번호	○ 행동유형
○ 운전면허종류	○ 당사자 주요상해부위
○ 운전면허경과연수	

⑭ 국적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국적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한국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중국적자(한국-외국)일 경우 한국 국적 코드 입력
외국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⑮ 주거지 시군구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당사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구) 또는 군에 대한 「시(구)군 코드」

○ 외국 여행객 등 주거지가 없는 경우, 거주 중인 국내 숙소

⑯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 국적자)

⑰ 성별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 성별

⑱ 연령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 연령

⑲ 학생사고

▪ 항목 정의 및 범위

9)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주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해당사고 당사자의 학생 구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 없음		당사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로 학생 연령임에도 기타 이유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포함
취학전 아동	미취원아	초등학생 미만 연령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
	유치원아	초등학생 미만 연령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된 아동
초등학생 ~고등학생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초등학생의 경우 각 학년에 따라 구분
기타/불명		상기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⑳ 운전면허번호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자일 경우 소지한 해당 차량 운전 가능 면허증의 면허번호

㉑ 운전면허종류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운전면허 종류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없음		당사자가 보행자이거나 자전거, 물건 탑승 등 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 등을 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	당사자가 제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보통	당사자가 제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소형	당사자가 제1종 소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특수	당사자가 제1종 특수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제2종	보통	당사자가 제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소형	당사자가 제2종 소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원동기	당사자가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연습면허	1종	당사자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습면허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2종	당사자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습면허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국제면허		당사자가 국제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본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시
무면허		당사자가 사고 당시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자 포함)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㉒ 운전면허경과연수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운전면허경과연수

○ 연습면허의 경우는 1년 미만으로 한다.

○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한다.

○ 운전면허의 취소, 실효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동일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점으로 한다.

○ '불명'은 당사자가 판명되었으나 운전면허의 유무 또는 경과연수가 불명인 경우,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등을 말한다

㉓ 보호장구 착용여부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당사자의 보호 장구 착용 형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없음		당사자가 보행자이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차량 탑승 중일 경우
안전벨트	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
	비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착용불명	안전벨트 착용 불명시
안전모/보호장구 등	착용	안전모 또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있는 차량의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10]
	비착용	안전모 또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있는 차량의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착용불명	안전모 또는 보호장구 착용 불명시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㉔ 신체상해정도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신체 상해 정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사망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없음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㉕ 사고직전속도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 탑승 차종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차량일 경우 사고차량의 사고

10)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전 추정 속도

○ 사고직전속도는 기조사된 현장자료를 토대로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현장조사자료가 없는 경우는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력한다.

○ '불명'은 당사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등을 말한다.

㉖ 음주측정수치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시 사고당사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치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없음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00%로 측정된 경우
0.030% 미만 ~ 0.350% 이상	해당 혈중 알코올 농도(BAC) 수치에 따라 해당 코드 입력
측정불응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측정불능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었으나 사고 발생 후 다시 음주, 약물 복용 등 상황의 변화가 있었거나 상당 시간의 경과로 체내의 알코올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등 당사자가 판명되었지만 사고 당시의 음주여부를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㉗ 음주운전 횟수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없음	당사자가 보행자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치 않은 차량 운전자이거나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1회~3회 이상	음주 횟수

㉘ 법규위반내용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위반내용에 대한「법규위반 코드」

㉙ 행동유형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사고시 행동 유형(하단 그림 설명 참조)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의
운전	직진관	직진 중	도로를 따라서 직진 중행 중에 있는 경우
		앞지르기	진로를 바꿔서 앞차의 측방을 통과하여 그 전방으로 나

자	련	중	오기까지의 상태
		진로변경 중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옆 차로로 위치를 바꾸는 상태
	회전관련	좌회전 중	직진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하여 좌로 회전한 후 다시 직진 상태가 되기까지의 상태
		우회전 중	직진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하여 우로 회전한 후 다시 직진 상태가 되기까지의 상태
		유턴 중	유턴하고 있는 상태
	후진 중		차량 후미 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
	주행 중 대기		시동이 켜진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거나 좌/우회전 및 전방 보행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멈춰있는 상태
	주·정차 중		승객 승·하차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주·정차 중인 상태
	기타		상기 운전자 행동유형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횡단중	횡단보도 내	횡단보도[11]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외[12]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도통행중	마주보고 통행	상대방 차량과 마주보고 차도를 통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지고 통행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차도를 통행 중, 후방에서 차량이 진행해 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도 통행		보도 통행 또는 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길가장자리를 통행 또는 정지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차 중 관련		차량 탑승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격한 경우
	하차 중 관련		차량에서 하차를 완료한 직후 다른 차량이 충격한 경우로 차량에서 하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도로위 작업 중		도로공사, 청소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위 놀이 중		도로상에서 놀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놀이기구 사용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예,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보드, 공놀이, 소아용차 등)
	기타		상기 보행자 행동유형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11) 안전표지 등을 통해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
12)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였더라도 '횡단보도외'로 간주

: 차량 : 보행자

: 주 · 정차 : 후진 : 정지(교통여건)

: 차도 : 보도

<그림 29.01>
운전자-직진관련-직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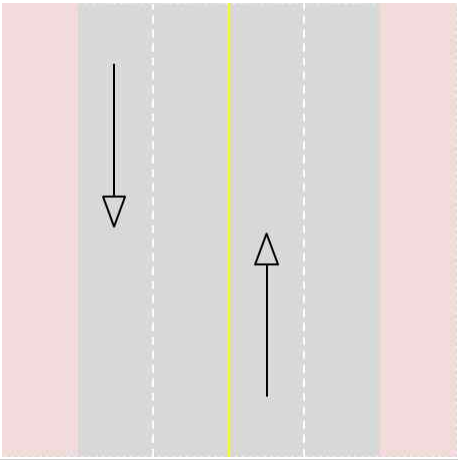

<그림 29.02>
운전자-직진관련-앞지르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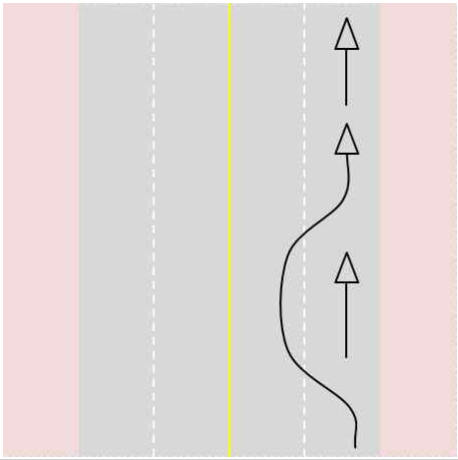

<그림 29.03> 운전자-직진관련-진로변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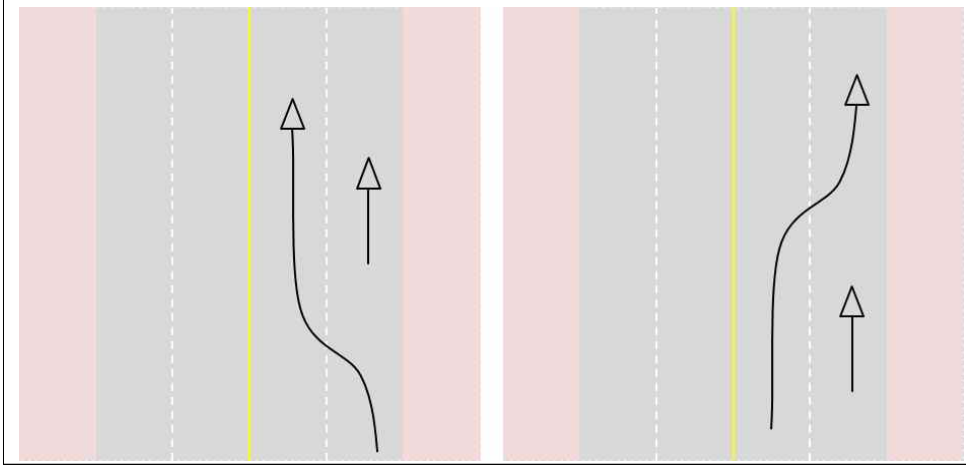

<그림 29.04>
운전자-회전관련-좌회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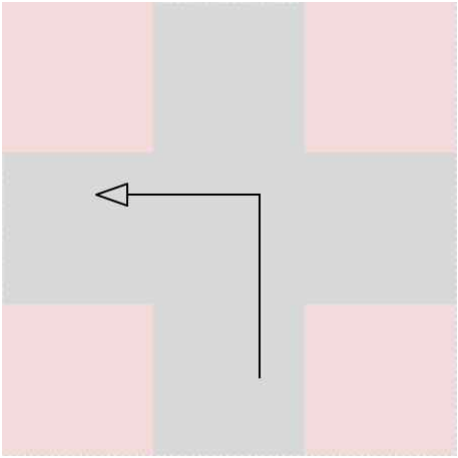

<그림 29.05>
운전자-회전관련-우회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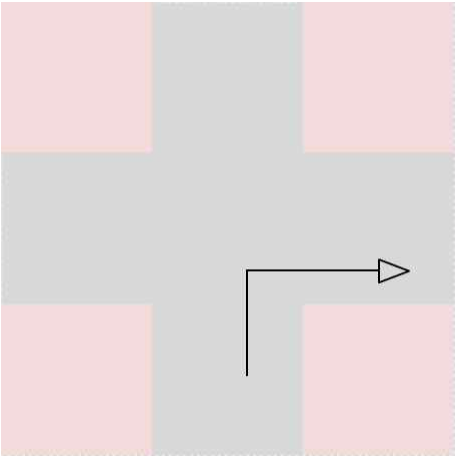

<그림 29.06>
운전자-회전관련-유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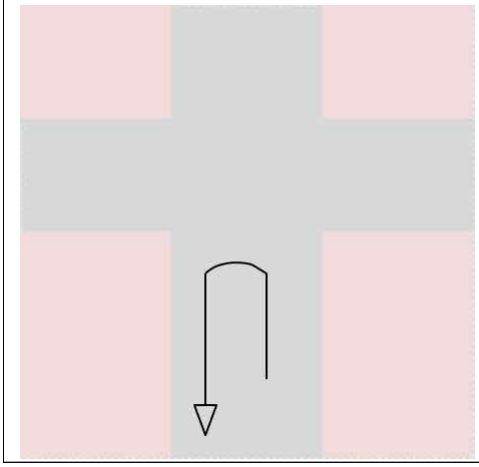

<그림 29.07> 운전자-후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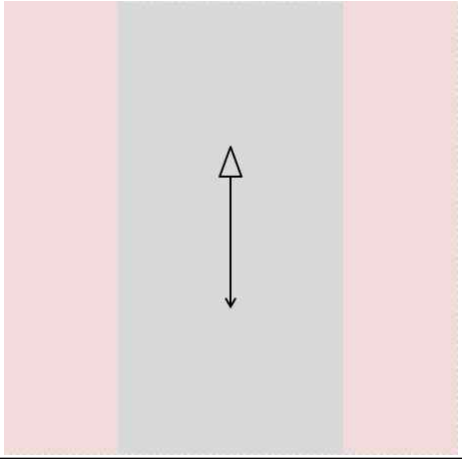

<그림 29.08> 운전자-주행 중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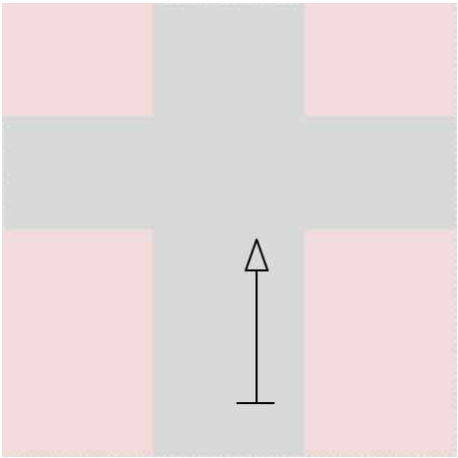

<그림 29.09> 운전자-주 · 정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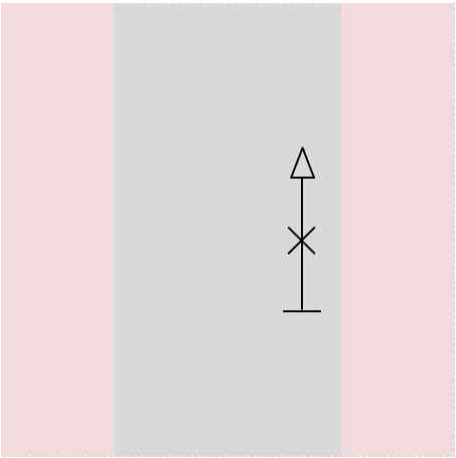

<그림 29.11>
보행자-횡단중-횡단보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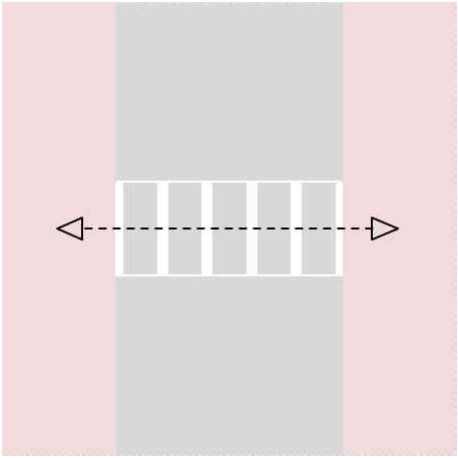

<그림 29.12>
보행자-횡단중-횡단보도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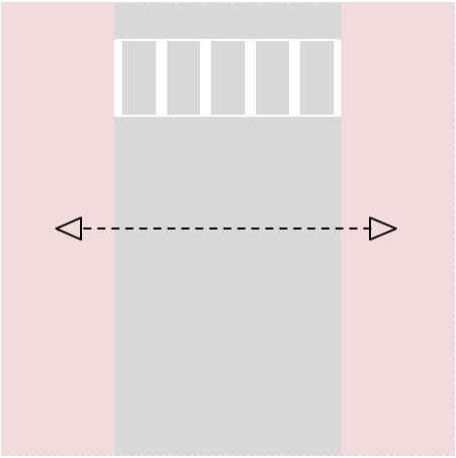

<그림 29.13>
보행자-차도통행중-마주보고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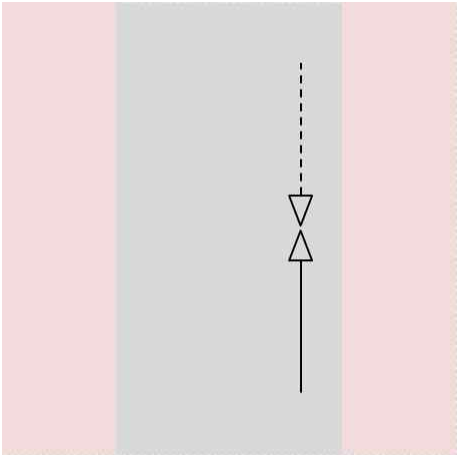

<그림 29.14>
보행자-차도통행중-등지고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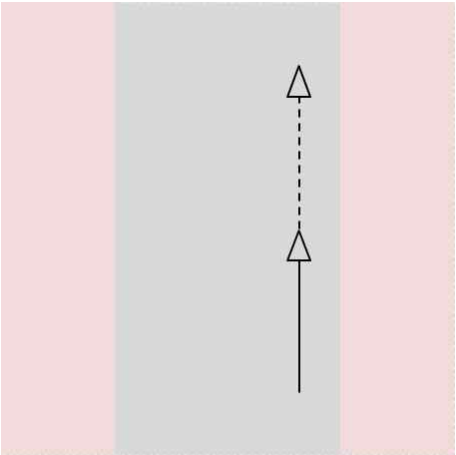

<그림 29.15> 보행자-보도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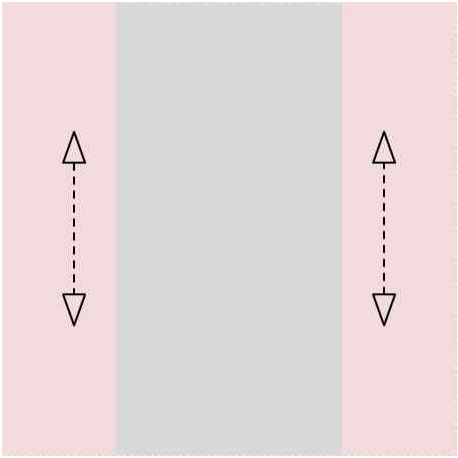

<그림 29.16>
보행자-길가장자리구역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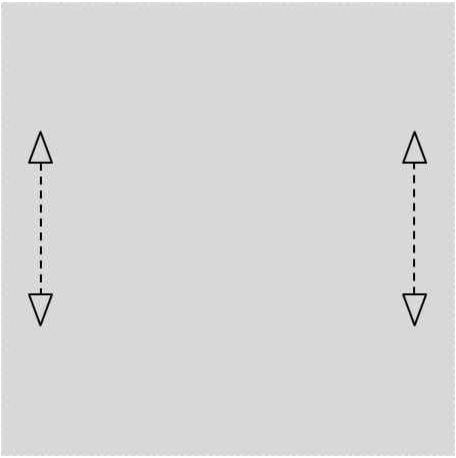

㉚ 당사자 주요상해부위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의 신체 상해 주부위(사고시 충돌 순서에 관계없이 상해 정도가 가장 심한 부위를 말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치명상의 부위를 말함)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상해 없음	신체에 상해가 없는 경우
앞면	얼굴 / 앞목 / 가슴 / 배
뒷면	머리 / 뒷목 / 등 / 허리
좌측	어깨 / 팔 / 손 / 대퇴부 / 하퇴부 / 발
우측	어깨 / 팔 / 손 / 대퇴부 / 하퇴부 / 발
기타	상기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앞면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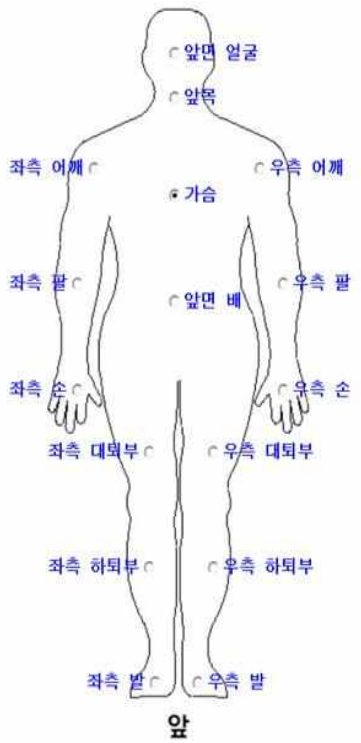	

□ 교통사고 차량

- 교통사고 제1당사자와 제2당사자의 차량 정보를 포함한다.

○ **차량등록번호**	○ **보험가입상황**
○ **차명**	○ **차량용도**
○ **연식**	○ **차량 충돌부위**
○ **당사자 차종**	

㉛ 차량등록번호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 관련 차량의 차량등록번호

㉜ 차명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 관련 차량의 차명

㉝ 연식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 관련 차량의 연식

㉞ 당사자 차종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의 당사자 유형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승용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이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포함
화물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측차부 포함)
사륜 오토바이 (ATV[13])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4륜의 자동차로 운전방법이 일반 이륜자동차와 동일하며 3륜 이상의 자동차에서 파생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1호 및 1의2호에 따른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PM)[14]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외발형/양발형 전동휠, 전동 킥보드, 자이로 드론 등)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27종 중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19종의 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스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드살포기, 골재살포기)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4종(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양기, 동력경운기)
보행자	도로를 보행중이거나 또는 달리고 있는 사람, 노상 작업중인 사람, 노상 유희중인 사람, 도로에 서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등 도로상에 있는 모든 사람
기타	상기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㉟ 보험가입상황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당사자 탑승차종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일 경우 해당차량의 보험가입 형태

13) All-Terrain Vehicle

14) Personal Mobility.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만 16세 이상 취득가능)만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 역시 의무사항이다.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가 입	종합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의거 책임보험 등의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업법에 의한 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에 한함)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자배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적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과 보험업법에 의한 종합보험,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공제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입대상 아님		자배법에서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인 경우(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및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등

㊱ 차량용도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 당사자 차종의 용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사업용차량15)	노선버스	마을버스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
		시내버스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
		시외버스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마을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외의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중에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버스
	전세버스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 통근, 통학 버스 포함
	특수여객(장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자동차
	택시	법인택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택시)로서 경영주체가 법인인 것을 말하며, 콜택시 포함
		개인택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택시)
	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렌터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위험물운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LPG, 액화산소 등)의 운송에 사용되는 구조장치를 갖춘 사업용 화물자동차 (예, 탱크로리 등)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를 반죽하면서 운송할 수 있는 구조장치를 갖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덤프트럭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 사업용 자동차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
	기타/건설기계		상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비사업용차	승용차		승차정원 6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특수한 구조를 갖춘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이더라도 승용차로 등록된 차를 포함
	버스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비사업용 일반 승합자동차

량[16]	어린이 통학 버스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포함)
	화물차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LPG, 액화산소 등)의 운송에 사용되는 구조장치를 갖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를 반죽하면서 운송할 수 있는 구조장치를 갖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덤프 트럭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 비사업용 자동차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
	기타/ 건설 기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또는 11인승 이상 16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예, 스타렉스 등)
이륜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측차부 포함)
사륜 오토바이 (ATV)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4륜의 자동차로 운전방법이 일반 이륜자동차와 동일하며 3륜 이상의 자동차에서 파생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1호 및 1의2호에 따른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PM)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외발형/양발형 전동휠, 전동 킥보드, 자이로 드론 등)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4종(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양기, 동력경운기)
보행자		도로를 보행중이거나 또는 달리고 있는 사람, 노상 작업중인 사람, 노상 유희중인 사람, 도로에 서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등 도로상에 있는 모든 사람
기타		상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15)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사업용건설기계로서 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것을 말한다.
16) 사업용 차량 이외의 것을 말한다.

㊲ 차량 충돌부위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당사자들의 사고시 충돌한 차량 부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table>
<tr><th>세부항목</th><th colspan="3">정 의</th></tr>
<tr><td>충돌없음</td><td colspan="3">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td></tr>
<tr><td rowspan="14">차량</td><td colspan="3">앞범퍼 / 뒤범퍼</td></tr>
<tr><td rowspan="5">우측</td><td>앞바퀴 앞</td><td>우측 앞바퀴 축을 기준으로 앞범퍼까지</td></tr>
<tr><td>중앙 앞</td><td>우측 앞바퀴 축을 기준으로 우측 앞좌석 차문까지(뒷편에 적재함이 있는 트럭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 이전까지)</td></tr>
<tr><td>중앙 뒤</td><td>우측 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우측 뒷좌석 차문까지(뒷편에 적재함이 있는 트럭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td></tr>
<tr><td>뒷바퀴 뒤</td><td>우측 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뒤범퍼까지</td></tr>
<tr><td colspan="2">후사경 / 앞 타이어 / 뒤 타이어</td></tr>
<tr><td rowspan="5">좌측</td><td>앞바퀴 앞</td><td>좌측 앞바퀴 축을 기준으로 앞범퍼까지</td></tr>
<tr><td>중앙 앞</td><td>좌측 앞바퀴 축을 기준으로 좌측 앞좌석 차문까지(뒷편에 적재함이 있는 트럭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 이전까지)</td></tr>
<tr><td>중앙 뒤</td><td>좌측 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좌측 뒷좌석 차문까지(뒷편에 적재함이 있는 트럭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 좌측 측면 부분)</td></tr>
<tr><td>뒷바퀴 뒤</td><td>우측 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뒤범퍼까지</td></tr>
<tr><td colspan="2">후사경 / 앞 타이어 / 뒤 타이어</td></tr>
<tr><td colspan="3">기타</td></tr>
<tr><td>이륜/
자전거 등</td><td colspan="3">전면 / 후면 / 측면 / 기타</td></tr>
<tr><td>기타</td><td colspan="3">상기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td></tr>
<tr><td>불명</td><td colspan="3">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td></tr>
</table>

1당	2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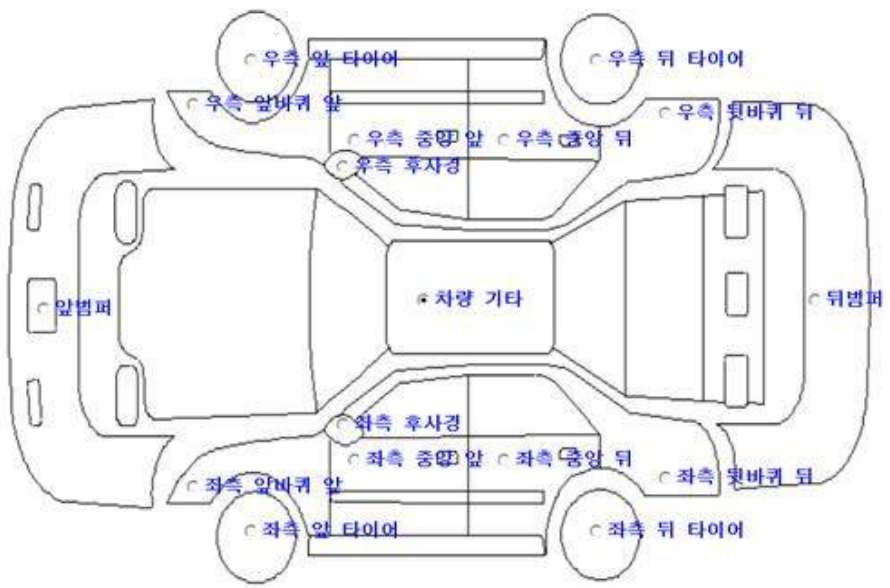

□ 교통사고 도로환경

▪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관련된 도로환경 정보를 포함한다.

○ 도로종류	○ 도로선형
○ 고속도로 번호	○ 중앙분리시설
○ 제한속도	○ 보차도분리시설
○ 전체 차로수(왕복)	○ 교통장애
○ 사고발생차로	○ 신호기운영
○ 도로형태	○ 특정도로
○ 교차로 형태	○ 고속도로 도로위치

㊳ 도로종류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발생장소에 해당하는 도로종류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일반국도	대통령령에 의해 그 노선이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유지 보수 운영하는 도로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로서 다음 항에 해당되는 도로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을 연결하거나 그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시도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군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이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축을 이루는 중요한 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그 노선이 지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 위탁)이 관리 주체가 되는 도로
기타	사도, 산길, 주차구역 등 상기도로 외의 도로

㊴ 고속도로 번호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발생장소가 고속도로일 경우 해당하는 고속도로 번호

㊵ 제한속도

▪ 항목 정의 및 범위

○ 제1당사자(보행자가 제1당사자일 경우에는 제2당사자)가 해당사고 직전에 통행 또는 주(정)차하고 있던 도로 또는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

통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판으로서 지정한 최고속도. 단, 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조건이 나쁠 경우(악천우, 폭설 등)에는 교통법에서 정하는 감소비율 만큼을 제한속도에서 차감.[17]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30km/h이하 ~110km/h초과	사고장소의 제한속도에 따라 해당 코드 입력
기타	속도 규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속도에 대한 규제가 규정되지 않는 곳. (예, 주차장, 휴게소, 주유소 등)

㊶ 전체 차로수(왕복)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전체 차로수(교차로상의 경우는 넓은 쪽의 차로수)

㊷ 사고발생차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의 제1당사자가 진행한 최초 사고발생 차로(편도). 사고발생위치가 양차로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제1당사자가 진행한 차로를 우선함

㊸ 도로형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형태(하단 그림 설명 참조)

17)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단일로[18]	터널안	터널 내를 말하며 터널 입구의 도로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코드 입력 후 터널명 직접 입력
	교량위	교량 위에서 발생한 사고
	고가도로위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를 말하며 고가도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하차도(도로)내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 · 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단,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기타	단일로 사고 중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	교차로내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내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내 전체를 횡단보도로 간주
	교차로부근	교차로 부근[19]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길건널목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도로에 부속 설치된 서비스구역(휴게소, 주유소 등), 주차구역 등과 같이 상기 도로형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명		불명인 경우

<그림 43.06> 교차로－교차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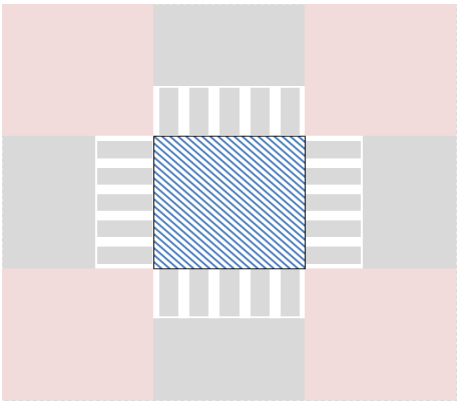

<그림 43.07>
교차로－교차로횡단보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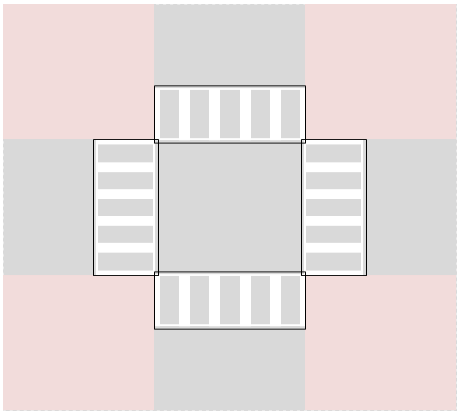

<그림 43.08> 교차로－교차로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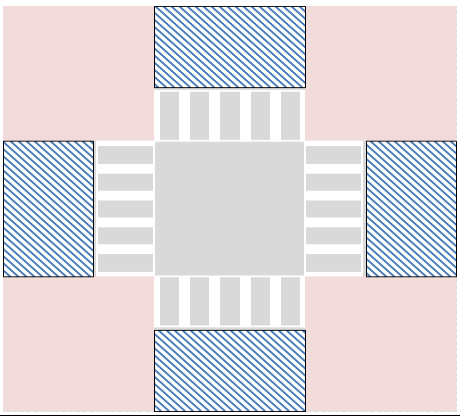

18) 해당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교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9) 횡단보도 측단(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내 경계 지점)에서 30미터 이내의 도로 부분

㊹ 교차로 형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형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교차로 아님		사고 발생 위치가 교차로가 아닌 경우로 입체교차로는 교차로가 아닌 것으로 간주
교차로	삼지	도로의 교차가 세 갈래인 경우
	사지	도로의 교차가 네 갈래인 경우
	오지 이상	도로의 교차가 다섯 갈래 이상인 경우
	회전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경우

㊺ 도로선형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선형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곡선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과 곡선지점의 전후 각 30미터이내
곡각	도로가 직각, 예각 또는 둔각형으로 구부러진 모퉁이에서 전후 각 30미터이내의 부분
좌 · 우	제1당사자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가 제1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등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결정
오르막 · 내리막	종단구배가 약3/100(3%)이상의 구배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도로부분의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의 부분을 말하며, 오르막 또는 내리막은 제1당사자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가 제1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등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결정
기타구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광역시도 포함), 시, 군도 등에 부속 설치된 도로상이 아닌 서비스구역(휴게소, 주유소 등)과 주차구역 등

㊻ 중앙분리시설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분리시설 유형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분리시설 없음	중앙분리시설이 없는 경우
화단	도로의 상 · 하행선이 화단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방책 등	콘크리트 barrier, 휀스, 및 방책 등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도로표지병	노면표시 위에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지병만 단독으로 설치하여 분리된 경우
노면표시	도로의 중앙부분을 따라서 노면에 페인트로 황색 실선 또는 점선, 이중실선 등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줄무늬, 횡선, 중앙분리지대 노면표시 등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타 분리시설	연석, 블록, 시선유도봉 등 기타시설물에 의해 분리되어 있거나 상 · 하행선이 완전히 독립되어 건설된 경우

㊼ 보차도분리시설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시설 유형

○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넓은 도로 쪽을 기준으로 함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노면표시	노면표시만으로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석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드레일/휀스 20)	보도와 차도가 가드레일 또는 휀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타분리시설	화단 등 상기시설 외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20) 가드레일 : 중앙분리대, 길가장자리 / 휀스 : 분리시설

㊽ 교통장애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교통장애요인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장애 없음	해당사고에 영향을 미친 기타 교통사고, 도로공사 또는 기타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
선행 교통사고	해당사고 발생 전에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가 해당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한 경우
도로공사	도로상의 공사(도로포장, 지하철, 상하수관, 전기, 통신), 청소 등 도로상에서의 작업이 해당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한 경우
고장차량	엔진고장, 연료소진 등에 의하여 주행불능이 된 차량이 해당사고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경우
낙하물 (적재물추락/ 도로방치물 포함)	도로상에 떨어진 낙하물이 해당사고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한 경우.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 타이어 등
기타장애요인	상기 장애요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해당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 도로내동물사고 등)
불명	불명인 경우

㊾ 신호기운영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신호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가 대면하는 신호기의 동작 상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신호기 없음		사고장소에 신호기가 없는 경우
신호기 있음	점등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경우.「사람모양의 기호가 있는 녹색 등화의 점멸」은 「점등」으로 간주
	점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점멸 신호시
	소등	인위적으로 신호기를 조작하여 소멸케 한 경우, 정전과 그 밖의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 신호기의 신호등이 모두 꺼져있었던 경우도 소등으로 처리

㊿ 특정도로

- 항목 정의 및 범위

○ 해당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특징에 해당하는 도로 종류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경우.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고가도로 등

버스	중앙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도로의 가운데 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도로의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
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통행을 위해 화단, 분리대, 노면표시 등으로 일반차도와 분리되어 있는 도로 부분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가변차로		도로의 교통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대에 따라 차량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차로로 황색점선의 노면표시와 문형식 가변신호등이 설치된 차로
하이패스차로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차할 필요없이 무선통신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로
일방통행도로		차량이 한쪽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도로
보호 구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부분을 말하며, 일정시간대에만 적용하는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적용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만을 해당사고로 입력
	노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30구역	30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
기타		상기 특정도로 외 특정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㊶ 고속도로 도로위치

- 항목 정의 및 범위
  - ○ 해당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도로위치(하단 그림 설명 참조)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 없음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주행차로	해당도로에 2개 차로 이상의 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좌측단의 차로를 제외한 차로, 1개차로의 경우에는 그 차로를 말함
앞지르기차로	해당도로에 2개 차로 이상의 차로가 있을 경우에 좌측단의 차로를 말하며, 중앙분리대와의 사이에 있는 측대부분을 포함
오르막차로	오르막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부터 분리해서 통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로
가속 ·감속차로	본선차도로 진입하려고 할 때에 본선차도의 차량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가속을 위해 또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차로
유입 · 유출로	가속차로 또는 감속차로(가속차로 또는 감속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본선차도)에서 일반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유입 · 유출로 부분을 말하며, 요금소 부근은 제외
톨게이트 부근	본선상의 요금소(톨게이트)와 이와 접속하는 광장(톨플라자)을 말하며 유입(유출)로에 설치된 요금소
간이정류장	고속도로의 중간에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설치된 장소
졸음쉼터	자동차의 운전자 등이 잠시 휴식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
휴게소	간이정류장 및 졸음쉼터 보다 규모가 큰 휴게시설로서 주차장, 식당, 화장실, 매점, 주유소, 수리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갓길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하며, 가변차로 미운영시 가변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갓길로 간주
기타	상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치

<그림 51.02,03> 주행차로, 앞지르기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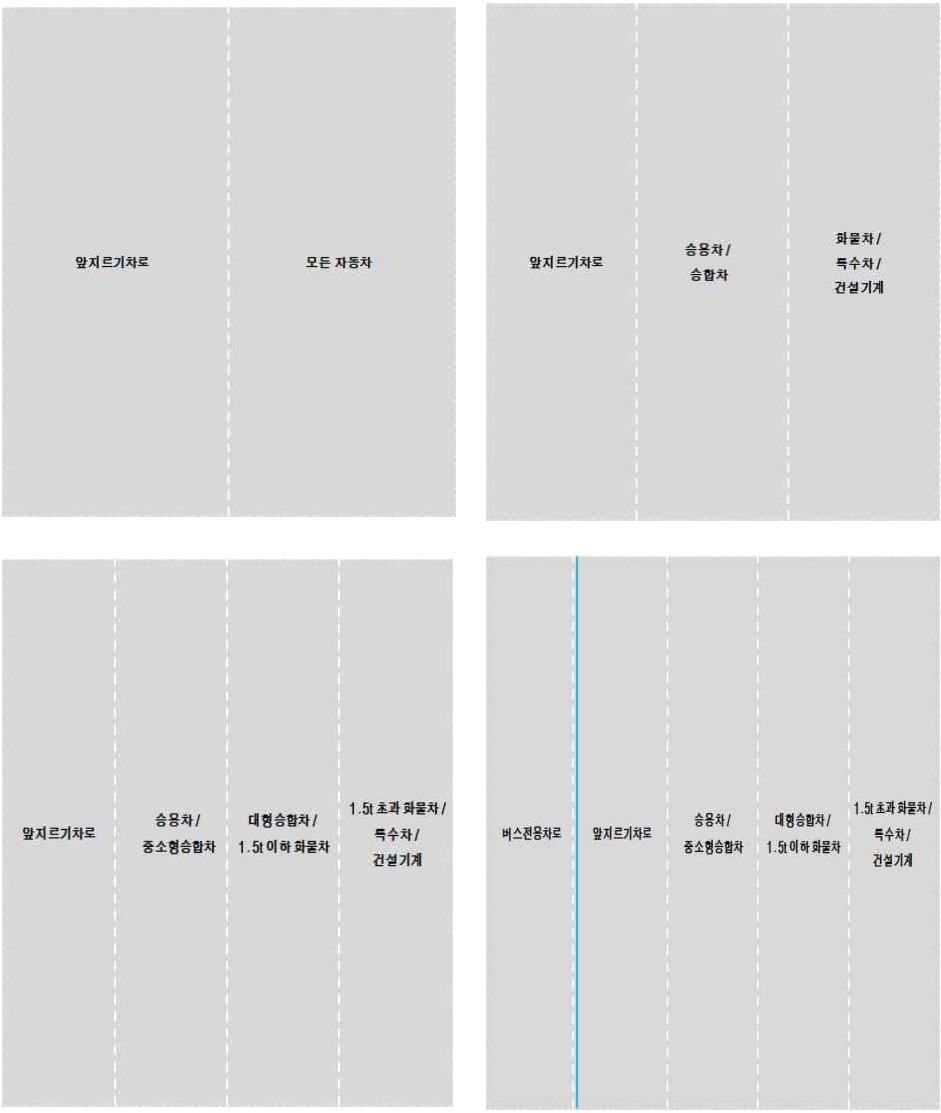

<그림 51.04> 오르막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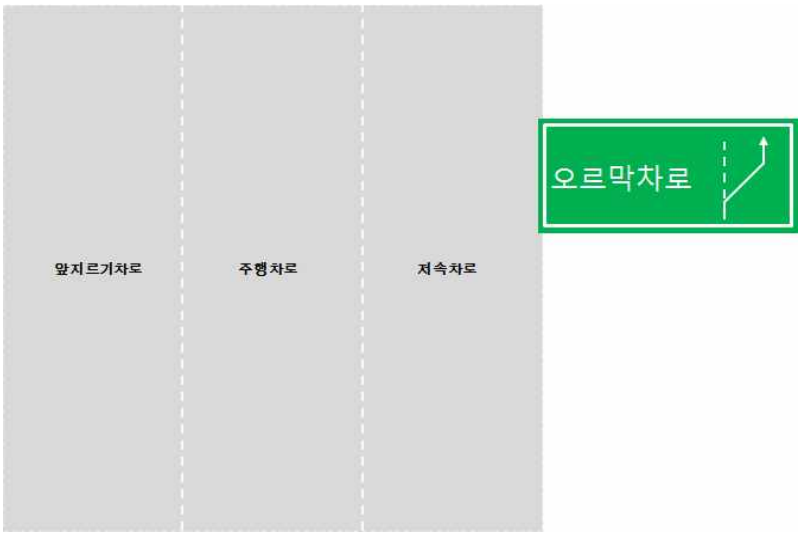

<그림 51.05,06> 가속 · 감속차로, 유입 · 유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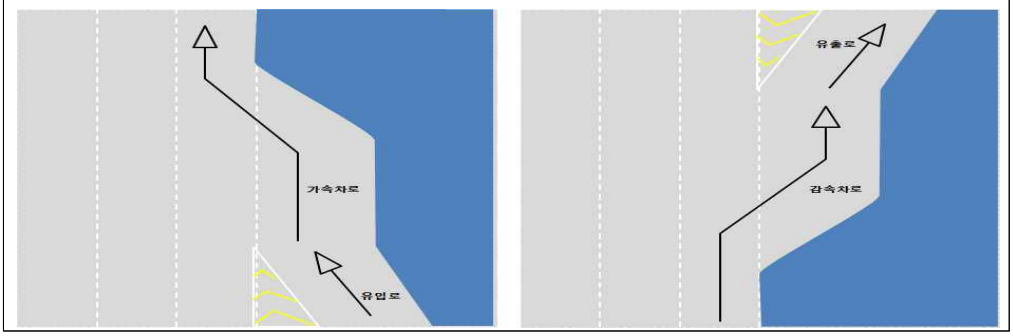

□ 기타 피해자(피해자별 작성)

- 1, 2 당사자 외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보호장구 착용여부
○ 성별	○ 신체상해정도
○ 연령	○ 피해당사자 차종
○ 학생사고	○ 신체상해 주요부위
○ 사고시 상태	

㊷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항목 정의 및 범위
  - ○ 기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외국 국적자)

㊸ 성별

- 항목 정의 및 범위
  - ○ 기타 피해자 성별

㊹ 연령

- 항목 정의 및 범위
  - ○ 기타 피해자 연령

㊺ 학생사고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 없음		당사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로 학생 연령임에도 기타 이유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포함
취학전 아동	미취원아	초등학생 미만 연령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
	유치원아	초등학생 미만 연령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속된 아동
초등학생 ~고등학생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초등학생의 경우 각 학년에 따라 구분
기타/불명		상기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㊻ 사고시 상태

- 항목 정의 및 범위
  - ○ 기타 피해자의 사고시 상태(‘㉙ 행동유형’ 그림 설명 참조)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탑승자	운전석		기타 피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조수석		기타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타고 있던 경우
	뒷좌석	입석	기타 피해자가 운전석이나 조수석 뒤 쪽에 서서 있던 경우
		착석	기타 피해자가 운전석이나 조수석 뒤 쪽에 앉아 있던 경우 (예, 버스에서 서 있던 승객 등)
	적재함		기타 피해자가 트럭의 적재함 등 적법하지 않은 공간에 타고 있던 경우
	기타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예, 구급차에 실려가던 환자, 구급요원 등)
보행자	횡단중	횡단보도 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외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도통행중	마주보고 통행	상대방 차량과 마주보고 차도를 통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지고 통행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차도를 통행 중, 후방에서 차량이 진행해 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도 통행		보도 통행 또는 정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길가장자리를 통행 또는 정지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차 중 관련		차량 탑승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격한 경우
	하차 중 관련		차량에서 하차를 완료한 직후 다른 차량이 충격한 경우로 차량에서 하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도로위 작업 중		도로공사, 청소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위 놀이 중		놀이기구를 사용하면서 도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보드, 공놀이, 소아용차 등)
	기타		보행자 사고이면서 상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 기타 피해자가 불명일 경우

㊼ 보호장구 착용여부

- 항목 정의 및 범위
  - ○ 기타 피해자의 보호 장구 착용 형태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해당없음		당사자가 보행자이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차량 탑승 중일 경우
안전벨트(카시트 포함)	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
	비착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거나 카시트 의무 사용 연령(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일반 안전벨트 착용시
	착용불명	안전벨트(카시트 포함) 착용 불명시
안전모/보호장구 등	착용	안전모 또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있는 차량의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
	비착용	안전모 또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있는 차량의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착용불명	안전모 또는 보호장구 착용 불명시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㊽ 신체상해정도

- 항목 정의 및 범위
  - ○ 기타 피해자의 신체 상해 정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사망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⑲ 피해당사자 차종

- 항목 정의 및 범위

  ○ 기타 피해자의 사고 당시 탑승차종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승용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이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포함
화물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측차부 포함)
사륜오토바이(ATV)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4륜의 자동차로 운전방법이 일반 이륜자동차와 동일하며 3륜 이상의 자동차에서 파생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1호 및 1의2호에 따른 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PM)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외발형/양발형 전동휠, 전동 킥보드, 자이로 드론 등)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27종 중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19종의 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스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드살포기, 골재살포기)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 농기계 4종(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양기, 동력경운기)
보행자	도로를 보행중이거나 또는 달리고 있는 사람, 노상 작업중인 사람, 노상 유희중인 사람, 도로에 서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등 도로상에 있는 모든 사람
기타	상기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불명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불명일 경우

⑥⓪ 신체상해 주요부위

■ 항목 정의 및 범위

○ 기타 피해자의 신체 상해 주부위(사고시 충돌 순서에 관계없이 상해 정도가 가장 심한 부위를 말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치명상의 부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부위

▪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 의
상해없음	신체에 상해가 없는 경우
앞면	얼굴 / 앞목 / 가슴 / 배
뒷면	머리 / 뒷목 / 등 / 허리
좌측	어깨 / 팔 / 손 / 대퇴부 / 하퇴부 / 발
우측	어깨 / 팔 / 손 / 대퇴부 / 하퇴부 / 발
불명	뺑소니 등으로 당사자가 불명인 경우

앞면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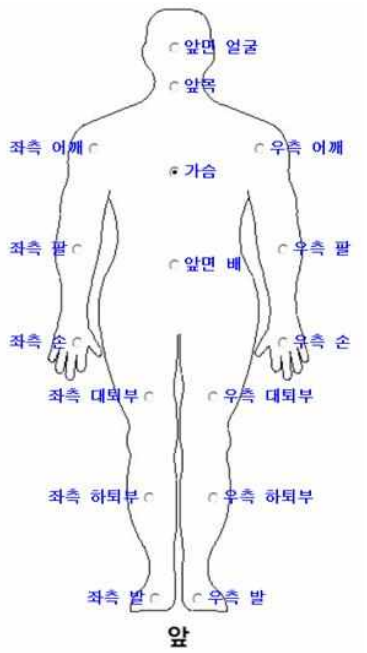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

○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620호)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원표 기준으로 입력

■ 교통사고 개요

①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② 주야	
주	1
야	2

③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④ 발생시군구			

⑤ 발생경찰서			

⑥ 발생위치좌표										
횡좌표(경도)										
종좌표(위도)										

⑦ 기상상태	
맑음	1
흐림	2
비	3
안개	4
눈	5
기타	6

⑧ 노면상태		
구분	포장	비포장
건조	01	11
젖음/습기	02	12
침수	06	16
적설	04	14
해빙	07	17
서리/결빙	03	13
기타	05	15

⑨ 사고내용			
구분		사상자수	
사 망	1		
중 상	2		
경 상	3		
부상신고	4		

⑩ 관련차량대수	

⑪ 사고유형			
차대사람	횡단중		01
	차도통행중		02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03
	보도통행중		04
	기타		05
차대차	정면충돌		21
	측면충돌		22
	후진중충돌		26
	추돌		23
	기타		25
차량단독	전도		38
	전복		39
	공작물충돌		32
	주 · 정차차량충돌		33
	도로이탈	추락	34
		기타이탈	35
	운전자부재중 사고		36
	기타		37
철길건널목			41

⑫ 사고원인세부상태		
구분	1당	2당
인적상태	1	1
차량적상태	2	2
도로환경적상태	3	3

⑬ 특수사고		
구분	1당	2당
뺑소니		
역주행		
개문발차		
긴급자동차		
군용차		
도로 내 동물사고		
대리운전		
전기자동차		

■ 교통사고 당사자

⑭ 국적		
구분	1당	2당
한국	1	1
외국	2	2
불명	9	9

⑮ 주거지 시군구				
1당				
2당				

⑯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당							-							
2당							-							

⑰ 성별		
구분	1당	2당
남	1	1
여	2	2
불명	9	9

⑱ 연령			
1당			
2당			

⑲ 학생사고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0	00
취학전아동	미취원아	01	01
	유치원아	02	02
초등학생	1학년	03	03
	2학년	04	04
	3학년	05	05
	4학년	06	06
	5학년	07	07
	6학년	08	08
중학생		09	09
고등학생		10	10
기타/불명		99	99

⑳ 운전면허번호														
1당			-									-		
2당			-									-		

㉑ 운전면허종류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0	00
제1종	대형	01	01
	보통	02	02
	소형	03	03
	특수	04	04
제2종	보통	05	05
	소형	06	06
	원동기	07	07
연습면허	1종	08	08
	2종	09	09
국제면허		10	10
무면허		11	11
불명		99	99

㉒ 운전면허경과연수		
구분	1당	2당
1년 미만	1	1
2년 미만	2	2
3년 미만	3	3
4년 미만	4	4
5년 미만	5	5
10년 미만	6	6
15년 미만	7	7
15년 이상	8	8
불명	99	99

㉓ 보호장구 착용여부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7	7
안전벨트	착용	1	1
	비착용	2	2
	착용불명	3	3
안전모/보호장구 등	착용	4	4
	비착용	5	5
	착용불명	6	6
불명		9	9

■ 교통사고 당사자

㉔ 신체상해정도		
구분	1당	2당
사망	1	1
중상	2	2
경상	3	3
부상신고	4	4
상해 없음	5	5
불명	9	9

㉕ 사고직전속도		
구분	1당	2당
20km/h 이하	01	01
21km/h~30km/h	02	02
31km/h~40km/h	03	03
41km/h~50km/h	04	04
51km/h~60km/h	05	05
61km/h~70km/h	06	06
71km/h~80km/h	07	07
81km/h~90km/h	08	08
91km/h~100km/h	09	09
101km/h~110km/h	10	10
111km/h~120km/h	11	11
121km/h~140km/h	12	12
141km/h~160km/h	13	13
161km/h~180km/h	14	14
181km/h 이상	15	15
불명	99	99

㉖ 음주측정수치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0	00
0.030% 미만	01	01
0.030%~0.049%	02	02
0.050%~0.099%	03	03
0.100%~0.149%	04	04
0.150%~0.199%	05	05
0.200%~0.249%	06	06
0.250%~0.299%	07	07
0.300%~0.349%	08	08
0.350% 이상	09	09
측정불응	10	10
측정불능	11	11
불명	99	99

㉗ 음주운전 횟수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	0
1회	1	1
2회	2	2
3회 이상	3	3

㉘ 법규위반내용					
1당					
2당					

㉙ 행동유형				
구분			1당	2당
운전자	직진 관련	직진 중	01	01
		앞지르기 중	02	02
		진로변경 중	03	03
	회전 관련	좌회전 중	05	05
		우회전 중	06	06
		유턴 중	07	07
	후진 중		08	08
	주행 중 대기		09	09
	주·정차 중		10	10
	기타		11	11
보행자	횡단 중	횡단보도내	21	21
		횡단보도외	22	22
	차도 통행중	마주보고 통행	23	23
		등지고 통행	24	24
	보도 통행		25	25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26	26
	승차 중 관련		27	27
	하차 중 관련		28	28
	도로위 작업 중		29	29
	도로위 놀이 중		30	30
	기타		31	31
불명			99	99

■ 교통사고 당사자

㉚ 당사자 주요상해부위			
구분		1당	2당
상해 없음		00	00
앞면	얼굴	01	01
	앞목	02	02
	가슴	03	03
	배	04	04
뒷면	머리	05	05
	뒷목	06	06
	등	07	07
	허리	08	08
우측	어깨	09	09
	팔	10	10
	손	11	11
	대퇴부	12	12
	하퇴부	13	13
	발	14	14
좌측	어깨	15	15
	팔	16	16
	손	17	17
	대퇴부	18	18
	하퇴부	19	19
	발	20	20
기타		98	98
불명		9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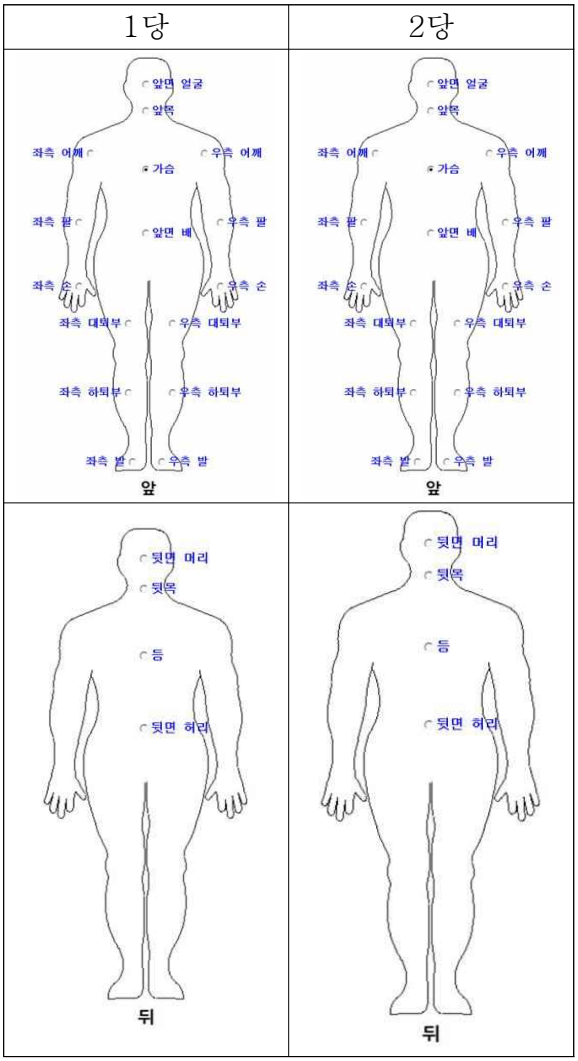

■ 교통사고 차량

㉛ 차량등록번호											
1당			-				-				
2당			-				-				

㉜ 차명	
1당	
2당	

㉝ 연식				
1당				
2당				

㉞ 당사자 차종		
구분	1당	2당
승용차	01	01
승합차	02	02
화물차	03	03
특수차	04	04
이륜차	05	05
사륜오토바이(ATV)	06	06
원동기장치자전거	07	07
자전거	08	08
개인형이동수단(PM)	09	09
건설기계	10	10
농기계	11	11
보행자	12	12
기타	98	98
불명	99	99

㉟ 보험가입상황			
구분		1당	2당
가입	종합보험	1	1
	책임보험	2	2
	공제	3	3
미가입		4	4
가입대상 아님		5	5
불명		9	9

㊱ 차량용도				
구분			1당	2당
사업용차량	노선버스	마을버스	17	17
		시내버스	01	01
		시외버스	02	02
		고속버스	03	03
	전세버스		04	04
	특수여객(장의)		05	05
	택시	법인택시	06	06
		개인택시	07	07
	화물차		08	08
	렌터카		11	11
	위험물운송		13	13
	콘크리트믹서		12	12
	덤프트럭		14	14
	기타/건설기계		15	15
비사업용차량	승용차		21	21
	버스		22	22
	어린이통학버스		23	23
	화물차		26	26
	위험물운송		25	25
	콘크리트믹서		24	24
	덤프트럭		32	32
	기타/건설기계		31	31
이륜차			27	27
사륜오토바이(ATV)			28	28
원동기장치자전거			29	29
자전거			43	43
개인형이동수단(PM)			35	35
농기계			36	36
보행자			42	42
기타			98	98
불명			99	99

■ 교통사고 차량

㊲ 차량 충돌부위				
구분			1당	2당
충돌 없음			00	00
차량	앞범퍼		01	01
	뒤범퍼		02	02
	우측	앞바퀴 앞	03	03
		중앙 앞	04	04
		중앙 뒤	05	05
		뒷바퀴 뒤	06	06
		후사경	07	07
		앞 타이어	08	08
		뒤 타이어	09	09
	좌측	앞바퀴 앞	10	10
		중앙 앞	11	11
		중앙 뒤	12	12
		뒷바퀴 뒤	13	13
		후사경	14	14
		앞 타이어	15	15
		뒤 타이어	16	16
	기타		17	17
자전거 등 이륜/	전면		21	21
	후면		22	22
	측면		23	23
	기타		24	24
기타			98	98
불명			99	99

1당	2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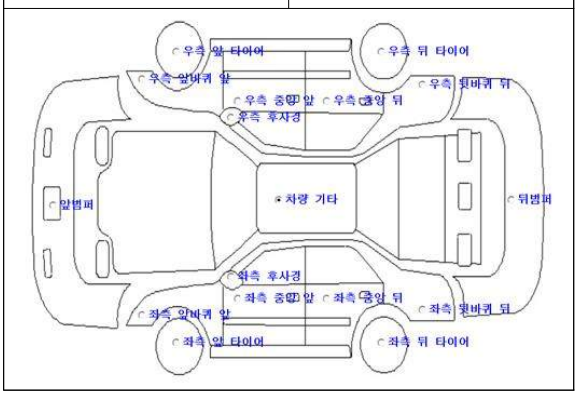

■ 교통사고 도로환경

㊳ 도로종류	
일반국도	1
지방도	2
특별광역시도	3
시도	4
군도	5
고속국도	6
기타	9

㊴ 고속도로 번호			

㊵ 제한속도	
30km/h 이하	01
40km/h	02
50km/h	03
60km/h	04
70km/h	05
80km/h	06
90km/h	07
100km/h	08
110km/h	09
110km/h 초과	10
기타	98

㊶ 전체 차로수(왕복)	

㊷ 사고발생차로	

㊸ 도로형태		
단일로	터널안	01
	교량위	02
	고가도로위	03
	지하차도(도로)내	04
	기타	05
교차로	교차로내	06
	교차로횡단보도내	07
	교차로부근	08
주차장		09
철길건널목		10
기타		98
불명		99

㊹ 교차로 형태		
교차로 아님		1
교차로	삼지	2
	사지	3
	오지 이상	4
	회전	5

㊺ 도로선형			
곡선 / 곡각	좌	오르막	01
		내리막	02
		평지	03
	우	오르막	04
		내리막	05
		평지	06
직선	오르막		07
	내리막		08
	평지		09
기타구역			98

■ 교통사고 도로환경

㊻ 중앙분리시설	
분리시설 없음	6
화단	4
방책 등	2
도로표지병	3
노면표시	1
기타분리시설	5

㊼ 보차도분리시설	
노면표시	
연석	
가드레일/휀스	
기타분리시설	

㊽ 교통장애	
장애 없음	6
선행교통사고	1
도로공사	2
고장차량	3
낙하물(적재물추락/도로방치물 포함)	7
기타장애요인	5
불명	9

㊾ 신호기운영		
신호기 없음		5
신호기 있음	점등	1
	점멸	2
	소등	3

㊿ 특정도로		
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가변차로		
하이패스차로		
일방통행도로		
보호구역 등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30구역	
기타		

51 고속도로 도로위치	
해당 없음	00
주행차로	01
앞지르기차로	02
오르막차로	03
가속 · 감속차로	04
유입 · 유출로	05
톨게이트 부근	07
간이정류장	08
졸음쉼터	12
휴게소	09
갓길	10
기타	11

■ 기타 피해자(피해자별 작성)

㊷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㊸ 성별	
남	1
여	2
불명	9

㊹ 연령		

㊺ 학생사고		
해당 없음		00
취학전아동	미취원아	01
	유치원아	02
초등학생	1학년	03
	2학년	04
	3학년	05
	4학년	06
	5학년	07
	6학년	08
중학생		09
고등학생		10
기타/불명		99

㊻ 사고시 상태			
탑승자	운전석		13
	조수석		14
	뒷좌석	입석	16
		착석	17
	적재함		18
	기타		19
보행자	횡단중	횡단보도내	21
		횡단보도외	22
	차도 통행중	마주보고 통행	23
		등지고 통행	24
	보도 통행		25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26
	승차 중 관련		27
	하차 중 관련		28
	도로위 작업 중		29
	도로위 놀이 중		30
	기타		31
불명			99

㊼ 보호장구 착용여부		
해당 없음		7
안전벨트 (카시트 포함)	착용	1
	비착용	2
	착용불명	3
안전모/ 보호장구 등	착용	4
	비착용	5
	착용불명	6
불명		9

㊽ 신체상해정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1	2	3	4

㊾ 피해당사자 차종	
승용차	01
승합차	02
화물차	03
특수차	04
이륜차	05
사륜오토바이(ATV)	06
원동기장치자전거	07
자전거	08
개인형이동수단(PM)	0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보행자	12
기타	98
불명	99

■ 기타 피해자(피해자별 작성)

⑥⓪ 당사자 주요상해부위		
상해 없음		00
앞면	얼굴	01
	앞목	02
	가슴	03
	배	04
뒷면	머리	05
	뒷목	06
	등	07
	허리	08
우측	어깨	09
	팔	10
	손	11
	대퇴부	12
	하퇴부	13
	발	14
좌측	어깨	15
	팔	16
	손	17
	대퇴부	18
	하퇴부	19
	발	20
기타		98
불명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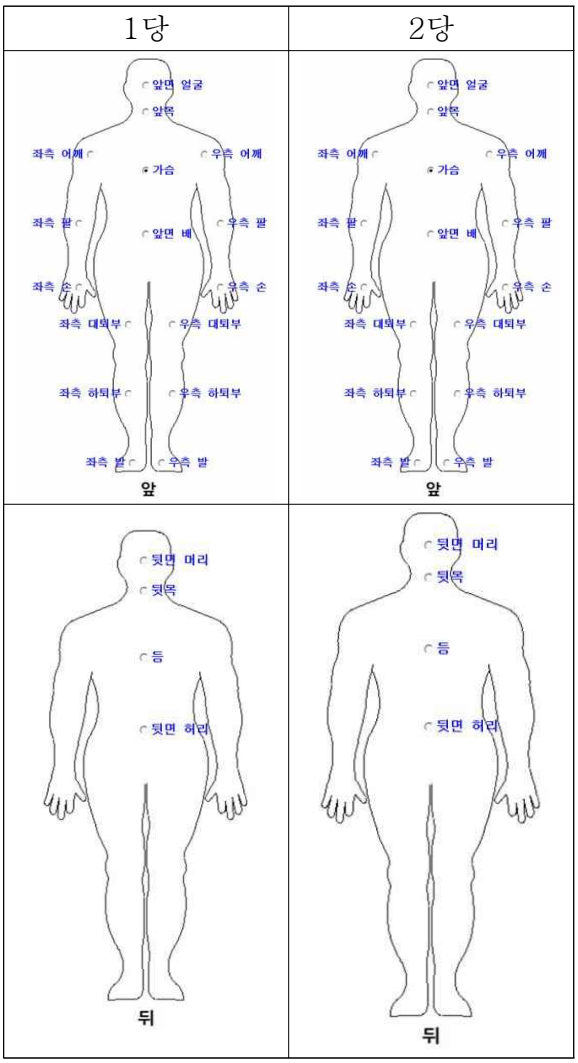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1976. 11. 30. : 신규통계작성 승인

○ 1992. 5. 12.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치안본부가 독립중앙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승인번호 변경

○ 1993. 11. 12. : 공표협의 면제(면제기간 : ’94. 1. 1. ~ ’95. 12. 31.)

○ 1993. 11. 27. : 승인번호 체계의 변경(인구총조사 외 361종 승인번호 변경)

- 승인번호 체계 ○○○○○

  1. 첫 번째 자리 : 기관구분

  2. 두세번째 자리 : 기관 고유번호

  3. 네다섯째 자리 : 승인통계 일련번호(1회한 통계 제외)

○ 1995. 12. 5. : 공표협의 면제(면제기간 : ’96. 1. 1. ~ ’97. 12. 31.)

○ 2001. 11. 14. : 통계명칭 및 작성주기 변경

- 통계명칭 : 교통사고 발생상황
- 작성주기 : 년
- 변경사유 : oecd 회원 가입국의 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사망자 기준을 72시간에서 30일까지로 변경(2000.1.1.부터) 하여 통계 작성 후 연단위로 공표, 작성주기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 2007. 5. 30. : 교통사고 발생통계 결과 공표협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 2009. 4. 5. : 보고서식(교통사고 통계원표) 및 공표서식 변경

- 통계원표 번호 수정, 통계원표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추가
- 공표서식(교통사고 통계 책자)에 항목 추가(5종)

  ※ 2005년 통계원표 개정으로 65개로 변경, 2012년 통계원표 개정 : 68개 항목(3개 추가), 2017년 통계원표 개정(68개→60개 항목, 삭제 8개 항목, 개정 3개)

○ 2014. 7. 17. : 통계명칭 변경

- 통계명칭 :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에서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으로 변경
-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3202호(1976.11.30.)
-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4. 7. 17.
- 변경사유 : 경찰에 ‘접수·처리된 사고건수’를 통계용어상 ‘발생건수’로 상용할 경우 경찰통계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 통계라는 오인을 야기
- 통계항목 : 발생(건) → 사고건수

  ※ 주석에 ‘경찰에서 접수·처리하는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라고 명기
- 통계청 고시 : 제2014-208호(2014.7.21.)

○ 2017.1. : 교통사고 통계원표 개선

- 개정이유 :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PM)과 같은 신규 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통계원표 항목 68개에서 60개 항목으로 개선
- 개정내용 : 통계 활용가치가 부족한 항목 삭제, 세부내용 변경 등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조사대상

○ 대 상

- 경찰에 신고·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 조사범위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교통사고처리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조사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방법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교통사고조사보고서(교통사고 통계원표)를 집계

○ 조사체계

-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상 교통사고조사보고서(교통사고 통계원표) 입력 → 경찰청

□ 조사기간

○ 작성대상기간/시점

- 조사 대상기간 : 1년(1.1.~12.31)
- 조사시점 : 익년 3월 통계원표 마감 후

3. 통계작성 개편

□ 교통사고 통계원표 개선(2017년)

○ 개정이유

-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PM)과 같은 신규 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통계원표 항목 68개에서 60개 항목으로 개선

○ 통계원표 개정경과

- 2016. 4. ~ 11. 산하기관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원표 개선 연구용역
- 2016. 11. ~ 12. 개선 통계원표 시스템 반영
- 2017. 1. ~ 6. 개선 통계원표 시범운영 및 시스템 추가 개선

○ 통계원표 개정내용

- 통계 활용가치가 부족한 8개 항목 삭제, 세부내용 334개 수정
- 세부내용 중 전기차·개인형 이동수단 등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71개 추가, 118개 개정,145개 삭제

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자료 수집 체계

○ 교통사고 통계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사고 중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처리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

○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을 명백히 가리고 피해발생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공소권의 유무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21]과 제4조 제1항[22]의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되면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공소권이 있으며,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가해자 보험가입 사실증명 및 합의여부에 따라 공소권의 유무가 결정된다.

<표> 교통사고 종류별 처리현황

구분	일반사고	사망 · 도주 · 특례 11개항 사고
공소권 유/무	공소권 없음	공소권 있음(형사입건)
형사적 조치	형사처벌면제(반의사불벌죄)[23]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조치	- 범칙금 부과(최고10만원이하)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 범칙금 없음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민사적 조치	보험처리	보험처리+피해자와 별도 합의

○ 경찰의 교통사고의 처리절차는 크게 교통사고 신고 접수, 현장출동 및 사상자 구호, 교통사고조사 및 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통사고 신고접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나라장터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되

21) 처벌의 특례
22)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3) 일반사고라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 형사입건 된다.

어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한 경찰관은 신속히 상사에게 발생일시, 장소, 사고의 종별, 피해상황을 보고하며, 사고발생지가 타서 관내인 때는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속히 통보하여 출동 조사하게 하고, 관내의 구호기관에 연락하여 구급차량 출동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 교통사고 현장출동 및 사상자구호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제4조(초동조치)에 의하면, 교통사고 현장은 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사상자의 인적사항·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현장 유류품·타이어 흔적 등 증거수집 및 사진촬영 등 조치를 취해야하며, 다른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출동·조사하게 되어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고현장 부근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구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시 의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한다.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보관한다. 또한 검시, 기타수속이 끝나면 신속히 입회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소지품과 함께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하여야하고, 사상자의 수용, 구호와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한한 교통을 신속히 해제하여 교통회복조치를 하고 초동조치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 교통사고 현장초동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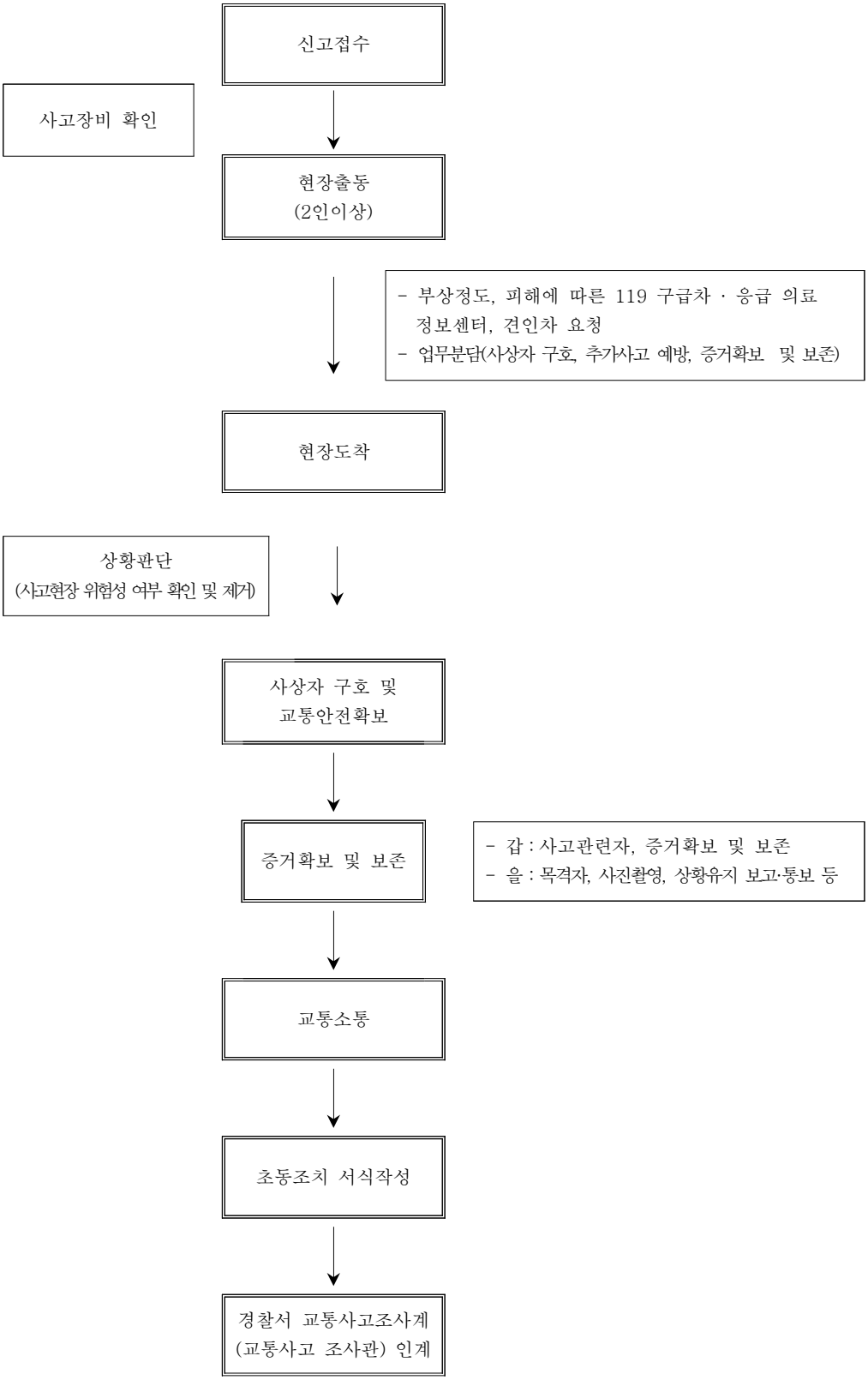

○ 교통사고 정보입력

교통사고조사항목 및 통계원표 기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자료입력

→ 사고일반 정보입력 → 사고차량 정보입력 → 조사자의견 정보입력

→ 행정처리 정보입력 → 차량이외피해/조치결과/피의자 정보입력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대상 교육

○ 각 지방청별 교통사고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 입력 기준 및 통계 추출방법 등 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연번	일 시	내 용	대 상 자
1	2018. 4. 24.	교통사고 통계 관련 교육	지방청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2	2018. 12. 13.	교통사고 통계원표 개선 관련 지방청 의견 수렴	지방청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3	2019. 6. 13.	교통사고 통계 활용방법 및 추출방법 등	지방청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자동차등록대수, 인구수, 도로연장거리 등

○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인구 10만명당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도로 1km당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매년 발간하는 교통사고 통계책자에 교통여건의 변화 등 책자 수록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교통사고 통계책자 타기관 자료 수록

○ 교통여건의 변화 등 관련자료 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 수집

- 추계인구수 : 통계포털(KOSIS) - 인구・가구/장래인구추계
- 등록인구수
  ①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인구통계
  ② 등록외국인(법무부)
- 자동차 등록대수
  ① 국토교통 통계누리(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자동차등록현황보고/자동차등록대수현황
  ② 국토교통 통계누리(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자동차등록현황보고/이륜차신고현황
  ③ 국토교통 통계누리(국토교통부) - 건설・수자원/건설기계 현황 통계
  ④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 보유현황
- 도로연장거리 :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국토교통부) - 도로현황총괄표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행정자료(인구, 자동차대수, 도로연장) 대비 교통사고율(사고, 사망, 부상) 산출

○ 인구대비 교통사고율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건, 사망자수, 부상자수(전국 및 지자체별 분류)

○ 자동차대비 교통사고율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 사망자수, 부상자수(전국 및 지자체별 분류)

○ 도로연장대비 교통사고율

- 도로연장 10km당 교통사고건, 사망자수, 부상자수(전국 및 지자체별 분류)

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입력 방법

○ 경찰에 신고 접수 처리된 인적피해 사건을 조사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

○ 교통사고 통계 매뉴얼(입력, 분석) 발간

■ 교통사고 개요

①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② 주야	
주	1
야	2

③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④ 발생시군구			

⑤ 발생경찰서			

⑥ 발생위치좌표										
횡좌표(경도)										
종좌표(위도)										

⑦ 기상상태	
맑음	1
흐림	2
비	3
안개	4
눈	5
기타	6

⑧ 노면상태		
구분	포장	비포장
건조	01	11
젖음/습기	02	12
침수	06	16
적설	04	14
해빙	07	17
서리/결빙	03	13
기타	05	15

⑨ 사고내용			
구분		사상자수	
사 망	1		
중 상	2		
경 상	3		
부상신고	4		

⑩ 관련차량대수	

⑪ 사고유형			
차대사람	횡단중		01
	차도통행중		02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03
	보도통행중		04
	기타		05
차대차	정면충돌		21
	측면충돌		22
	후진중충돌		26
	추돌		23
	기타		25
차량단독	전도		38
	전복		39
	공작물충돌		32
	주 · 정차차량충돌		33
	도로이탈	추락	34
		기타이탈	35
	운전자부재중 사고		36
	기타		37
철길건널목			41

⑫ 사고원인세부상태		
구분	1당	2당
인적상태	1	1
차량적상태	2	2
도로환경적상태	3	3

⑬ 특수사고		
구분	1당	2당
뺑소니		
역주행		
개문발차		
긴급자동차		
군용차		
도로 내 동물사고		
대리운전		
전기자동차		

■ 교통사고 당사자

⑭ 국적		
구분	1당	2당
한국	1	1
외국	2	2
불명	9	9

⑮ 주거지 시군구				
1당				
2당				

⑯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당							-							
2당							-							

⑰ 성별		
구분	1당	2당
남	1	1
여	2	2
불명	9	9

⑱ 연령			
1당			
2당			

⑲ 학생사고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0	00
취학전아동	미취원아	01	01
	유치원아	02	02
초등학생	1학년	03	03
	2학년	04	04
	3학년	05	05
	4학년	06	06
	5학년	07	07
	6학년	08	08
중학생		09	09
고등학생		10	10
기타/불명		99	99

⑳ 운전면허번호														
1당			-									-		
2당			-									-		

㉑ 운전면허종류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0	00
제1종	대형	01	01
	보통	02	02
	소형	03	03
	특수	04	04
제2종	보통	05	05
	소형	06	06
	원동기	07	07
연습면허	1종	08	08
	2종	09	09
국제면허		10	10
무면허		11	11
불명		99	99

㉒ 운전면허경과연수		
구분	1당	2당
1년 미만	1	1
2년 미만	2	2
3년 미만	3	3
4년 미만	4	4
5년 미만	5	5
10년 미만	6	6
15년 미만	7	7
15년 이상	8	8
불명	99	99

㉓ 보호장구 착용여부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7	7
안전벨트	착용	1	1
	비착용	2	2
	착용불명	3	3
안전모/보호장구 등	착용	4	4
	비착용	5	5
	착용불명	6	6
불명		9	9

■ 교통사고 당사자

㉔ 신체상해정도		
구분	1당	2당
사망	1	1
중상	2	2
경상	3	3
부상신고	4	4
상해 없음	5	5
불명	9	9

㉕ 사고직전속도		
구분	1당	2당
20km/h 이하	01	01
21km/h~30km/h	02	02
31km/h~40km/h	03	03
41km/h~50km/h	04	04
51km/h~60km/h	05	05
61km/h~70km/h	06	06
71km/h~80km/h	07	07
81km/h~90km/h	08	08
91km/h~100km/h	09	09
101km/h~110km/h	10	10
111km/h~120km/h	11	11
121km/h~140km/h	12	12
141km/h~160km/h	13	13
161km/h~180km/h	14	14
181km/h 이상	15	15
불명	99	99

㉖ 음주측정수치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0	00
0.030% 미만	01	01
0.030%~0.049%	02	02
0.050%~0.099%	03	03
0.100%~0.149%	04	04
0.150%~0.199%	05	05
0.200%~0.249%	06	06
0.250%~0.299%	07	07
0.300%~0.349%	08	08
0.350% 이상	09	09
측정불응	10	10
측정불능	11	11
불명	99	99

㉗ 음주운전 횟수		
구분	1당	2당
해당 없음	0	0
1회	1	1
2회	2	2
3회 이상	3	3

㉘ 법규위반내용					
1당					
2당					

㉙ 행동유형				
구분			1당	2당
운전자	직진 관련	직진 중	01	01
		앞지르기 중	02	02
		진로변경 중	03	03
	회전 관련	좌회전 중	05	05
		우회전 중	06	06
		유턴 중	07	07
	후진 중		08	08
	주행 중 대기		09	09
	주·정차 중		10	10
	기타		11	11
보행자	횡단 중	횡단보도내	21	21
		횡단보도외	22	22
	차도 통행중	마주보고 통행	23	23
		등지고 통행	24	24
	보도 통행		25	25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26	26
	승차 중 관련		27	27
	하차 중 관련		28	28
	도로위 작업 중		29	29
	도로위 놀이 중		30	30
	기타		31	31
불명			99	99

■ 교통사고 당사자

㉚ 당사자 주요상해부위			
구분		1당	2당
상해 없음		00	00
앞면	얼굴	01	01
	앞목	02	02
	가슴	03	03
	배	04	04
뒷면	머리	05	05
	뒷목	06	06
	등	07	07
	허리	08	08
우측	어깨	09	09
	팔	10	10
	손	11	11
	대퇴부	12	12
	하퇴부	13	13
	발	14	14
좌측	어깨	15	15
	팔	16	16
	손	17	17
	대퇴부	18	18
	하퇴부	19	19
	발	20	20
기타		98	98
불명		9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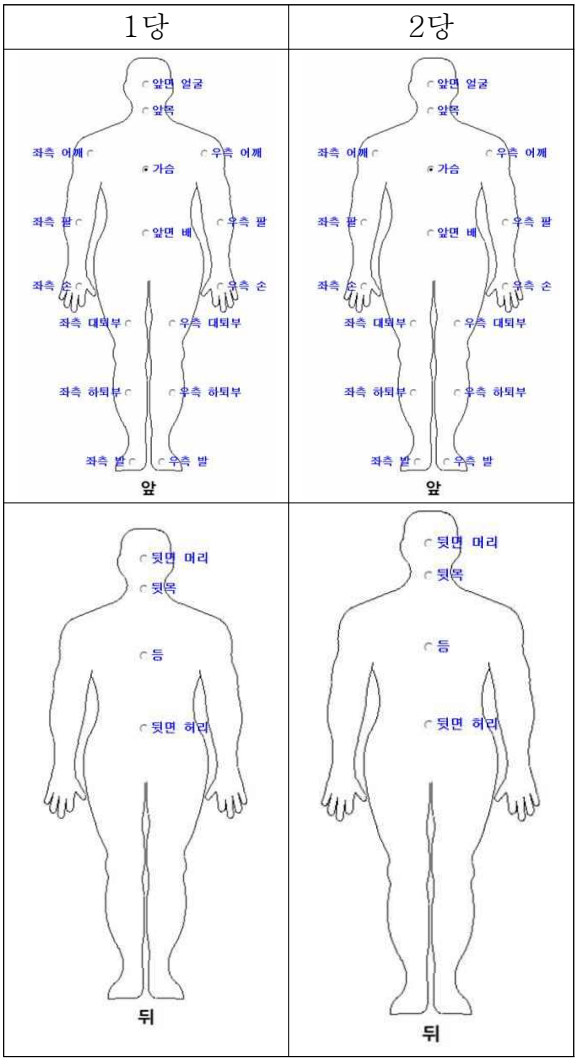

■ 교통사고 차량

㉛ 차량등록번호											
1당			-				-				
2당			-				-				

㉜ 차명	
1당	
2당	

㉝ 연식				
1당				
2당				

㉞ 당사자 차종		
구분	1당	2당
승용차	01	01
승합차	02	02
화물차	03	03
특수차	04	04
이륜차	05	05
사륜오토바이(ATV)	06	06
원동기장치자전거	07	07
자전거	08	08
개인형이동수단(PM)	09	09
건설기계	10	10
농기계	11	11
보행자	12	12
기타	98	98
불명	99	99

㉟ 보험가입상황			
구분		1당	2당
가입	종합보험	1	1
	책임보험	2	2
	공제	3	3
미가입		4	4
가입대상 아님		5	5
불명		9	9

㊱ 차량용도				
구분			1당	2당
사업용차량	노선버스	마을버스	17	17
		시내버스	01	01
		시외버스	02	02
		고속버스	03	03
	전세버스		04	04
	특수여객(장의)		05	05
	택시	법인택시	06	06
		개인택시	07	07
	화물차		08	08
	렌터카		11	11
	위험물운송		13	13
	콘크리트믹서		12	12
	덤프트럭		14	14
	기타/건설기계		15	15
비사업용차량	승용차		21	21
	버스		22	22
	어린이통학버스		23	23
	화물차		26	26
	위험물운송		25	25
	콘크리트믹서		24	24
	덤프트럭		32	32
	기타/건설기계		31	31
이륜차			27	27
사륜오토바이(ATV)			28	28
원동기장치자전거			29	29
자전거			43	43
개인형이동수단(PM)			35	35
농기계			36	36
보행자			42	42
기타			98	98
불명			99	99

■ 교통사고 차량

㊲ 차량 충돌부위				
구분			1당	2당
충돌 없음			00	00
차량	앞범퍼		01	01
	뒤범퍼		02	02
	우측	앞바퀴 앞	03	03
		중앙 앞	04	04
		중앙 뒤	05	05
		뒷바퀴 뒤	06	06
		후사경	07	07
		앞 타이어	08	08
		뒤 타이어	09	09
	좌측	앞바퀴 앞	10	10
		중앙 앞	11	11
		중앙 뒤	12	12
		뒷바퀴 뒤	13	13
		후사경	14	14
		앞 타이어	15	15
		뒤 타이어	16	16
	기타		17	17
자전거 등 이륜/	전면		21	21
	후면		22	22
	측면		23	23
	기타		24	24
기타			98	98
불명			99	99

1당	2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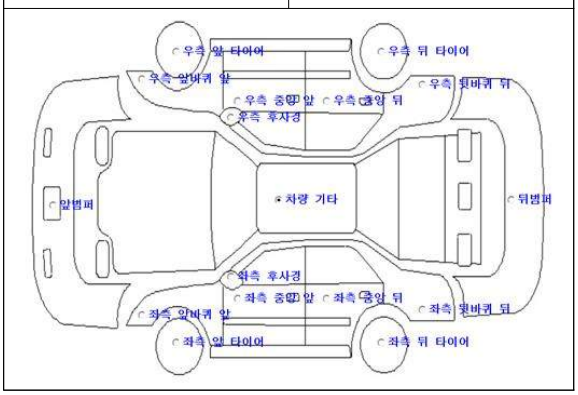

■ 교통사고 도로환경

㊳ 도로종류	
일반국도	1
지방도	2
특별광역시도	3
시도	4
군도	5
고속국도	6
기타	9

㊴ 고속도로 번호			

㊵ 제한속도	
30km/h 이하	01
40km/h	02
50km/h	03
60km/h	04
70km/h	05
80km/h	06
90km/h	07
100km/h	08
110km/h	09
110km/h 초과	10
기타	98

㊶ 전체 차로수(왕복)	

㊷ 사고발생차로	

㊸ 도로형태		
단일로	터널안	01
	교량위	02
	고가도로위	03
	지하차도(도로)내	04
	기타	05
교차로	교차로내	06
	교차로횡단보도내	07
	교차로부근	08
주차장		09
철길건널목		10
기타		98
불명		99

㊹ 교차로 형태		
교차로 아님		1
교차로	삼지	2
	사지	3
	오지 이상	4
	회전	5

㊺ 도로선형			
곡선 / 곡각	좌	오르막	01
		내리막	02
		평지	03
	우	오르막	04
		내리막	05
		평지	06
직선	오르막		07
	내리막		08
	평지		09
기타구역			98

■ 교통사고 도로환경

㊻ 중앙분리시설	
분리시설 없음	6
화단	4
방책 등	2
도로표지병	3
노면표시	1
기타분리시설	5

㊼ 보차도분리시설	
노면표시	
연석	
가드레일/휀스	
기타분리시설	

㊽ 교통장애	
장애 없음	6
선행교통사고	1
도로공사	2
고장차량	3
낙하물(적재물추락/도로방치물 포함)	7
기타장애요인	5
불명	9

㊾ 신호기운영		
신호기 없음		5
신호기 있음	점등	1
	점멸	2
	소등	3

㊿ 특정도로		
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가변차로		
하이패스차로		
일방통행도로		
보호구역 등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30구역	
기타		

51 고속도로 도로위치	
해당 없음	00
주행차로	01
앞지르기차로	02
오르막차로	03
가속 · 감속차로	04
유입 · 유출로	05
톨게이트 부근	07
간이정류장	08
졸음쉼터	12
휴게소	09
갓길	10
기타	11

■ 기타 피해자(피해자별 작성)

㊷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㊸ 성별	
남	1
여	2
불명	9

㊹ 연령		

㊺ 학생사고		
해당 없음		00
취학전아동	미취원아	01
	유치원아	02
초등학생	1학년	03
	2학년	04
	3학년	05
	4학년	06
	5학년	07
	6학년	08
중학생		09
고등학생		10
기타/불명		99

㊻ 사고시 상태			
탑승자	운전석		13
	조수석		14
	뒷좌석	입석	16
		착석	17
	적재함		18
	기타		19
보행자	횡단중	횡단보도내	21
		횡단보도외	22
	차도 통행중	마주보고 통행	23
		등지고 통행	24
	보도 통행		25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26
	승차 중 관련		27
	하차 중 관련		28
	도로위 작업 중		29
	도로위 놀이 중		30
	기타		31
불명			99

㊼ 보호장구 착용여부		
해당 없음		7
안전벨트 (카시트 포함)	착용	1
	비착용	2
	착용불명	3
안전모/ 보호장구 등	착용	4
	비착용	5
	착용불명	6
불명		9

㊽ 신체상해정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1	2	3	4

㊾ 피해당사자 차종	
승용차	01
승합차	02
화물차	03
특수차	04
이륜차	05
사륜오토바이(ATV)	06
원동기장치자전거	07
자전거	08
개인형이동수단(PM)	0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보행자	12
기타	98
불명	99

■ 기타 피해자(피해자별 작성)

⑥⓪ 당사자 주요상해부위		
상해 없음		00
앞면	얼굴	01
	앞목	02
	가슴	03
	배	04
뒷면	머리	05
	뒷목	06
	등	07
	허리	08
우측	어깨	09
	팔	10
	손	11
	대퇴부	12
	하퇴부	13
	발	14
좌측	어깨	15
	팔	16
	손	17
	대퇴부	18
	하퇴부	19
	발	20
기타		98
불명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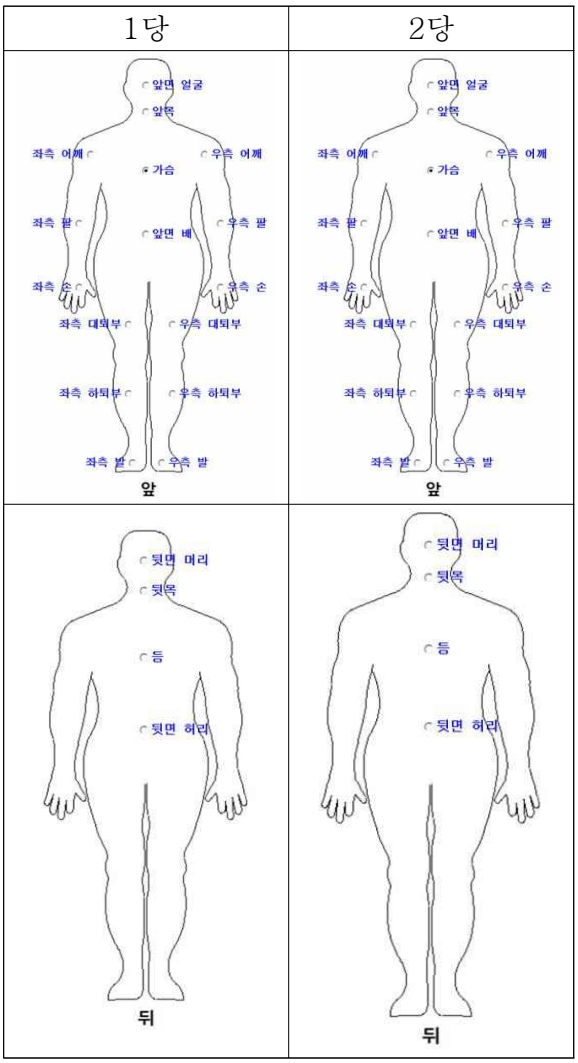

2. 자료내검

□ 자료 내검

○ 자료품질 및 신뢰성향상을 위한 분기별 데이터 점검 진행

- 분기별 수집데이터의 통계를 과년도 통계와 추세비교를 통한 이상치 점검
- 분기별 수집데이터의 지리정보를 통계정보와 상호비교하여 품질 개선

○ 자료의 상호 체크 검증 항목

점검번호	점검항목	상호점검항목	내용
1	발생일자	none	2018년 발생사고인지 점검
2	사고일시	요일	사고일시와 요일의 점검
3	사고유형	차종	사고유형이 차대차인데 2당사자 보행자인경우
4	사고유형	차종	사고유형이 차량단독인데 2당사자 보행자인경우
5	사고유형	차종	사고유형 : 차대사람, 차종2 : 보행자 아닌경우
6	사고유형	차량대수	사고유형 : 차대차이나 사고차량대수가 2미만인것
7	사고내용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사고내용정보와 사상자수 일치여부 점검
8	성별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성별과 주민등록번호7번째 자리 점검
9	충돌차량부위	차종	충돌차량부위가 '차량'이나 차종과 맞지 않는 경우
10	충돌차량부위	차종	충돌차량부위가 '이륜'이나 차종과 맞지 않는 경우
11	차량용도	차종	차량용도와 차종이 맞지 않는 경우
12	차종1	none	1당사자 차종이 보행자인 경우
	차종2	none	2당사자 차종이 보행자이나 행동유형이 맞지 않는 경우
13	사고직전추정속도	none	사고직전추정속도 입력값 점검
14	면허경과년수	none	면허경과년수 입력값 점검
15	운전면허종별	none	운전면허종별 입력값 점검

16	보호장구	차종	당사자별 보호장구 안전모이나 관련차종이 아닌경우
17	운전면허종별	면허번호	운전면허종별은 불명이나 면허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18	학생사고유형		학생사고유형 입력값 점검
19	보험가입상황	차종	보험가입상황이 '대상아님' 이나 차종과 맞지 않는 경우
20	차종	행동유형	2당보행자 행동유형 점검
21	차종	보호장구	2당보행자 보호장구 점검
22	도로형태	교차로유형	도로형태 '교차로'이나 교차로유형이 틀린경우
23	도로형태	교차로유형	도로형태 '단일로'이나 교차로유형이 틀린경우
24	고속도로위치	도로종류	고속도로위치에 고속도로이나 도로종류가 고속도로가 아닌것
25	고속도로위치	도로종류	고속도로위치가 고속도로가 아니나 도로종류가 고속도로인것
26	도로종류	고속도로번호	도로종류가 고속도로이나 고속도로번호가 없는 것
27	연령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사상자의 주민번호 앞 두자리로 점검

○ 경찰청별 행정구역별 사고위치정보 점검수행

2018년도 1분기 교통사고 위치정보 오류 현황

< 2018. 05. 11 수 >

구분	발생건수	오류 건수	점유율(%)
전체건수			

* 18년 1~3월 자료

* 위치좌표 오류 판단기준

: 사고위치 중심으로 직경 100M의 원안에 들어오는 법정동 코드값 일치여부

(입력한 사고위치의 법정동코드와 실제 법정동코드가 일치하면 정상, 불일치하면 오류로 판별)

구분	지방경찰청	오류 건수	발생 건수	오류율
1101	서울지방경찰청			
1201	부산지방경찰청			
1301	경기지방경찰청			
280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401	강원지방경찰청			
1501	충북지방경찰청			

미리보기

분기별 교통사고 위치정보 오류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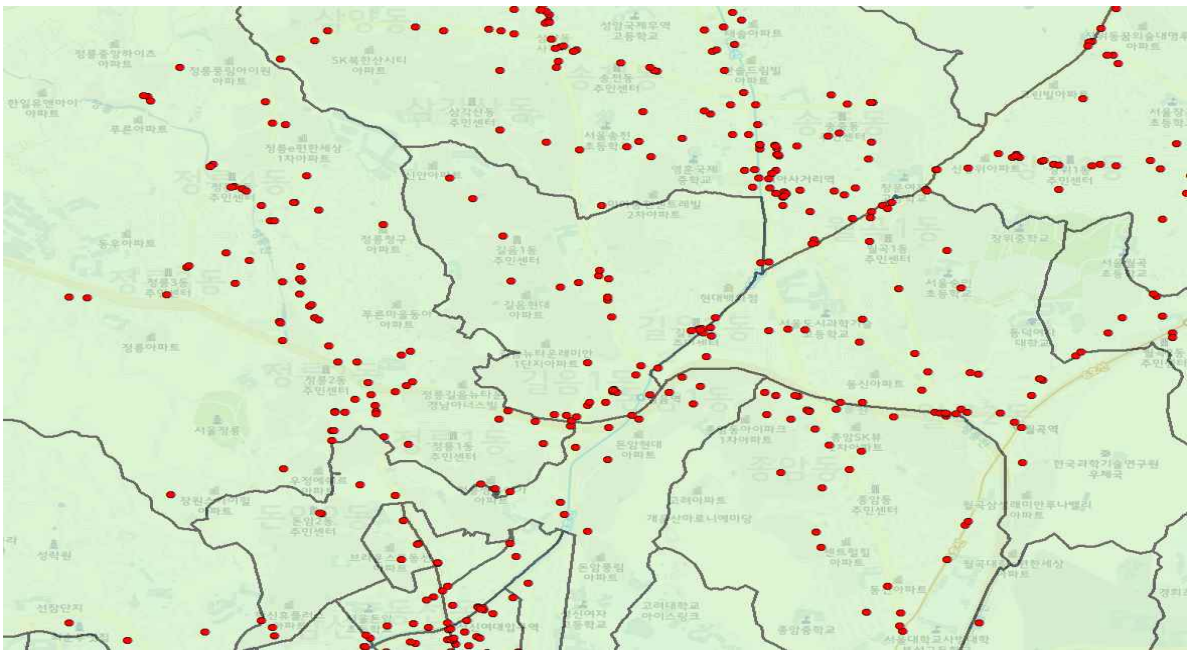

법정동 경계값 및 위치정보 상호비교 GIS분석 화면

3.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교통사고 통계 연간 통계자료 마감 전 매 분기별 통계자료를 점검·확인하여 데이터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 수정·보완 요청

- 입력 오류 건수가 많은 항목은 전산 알고리즘 연계하여 오류항목 최소화토록 보완
- 도로종류별, 사고유형별, 음주사고 등 각 항목별 통계 마감시 전년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을 하여 보완

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교통사고 현황 주요 통계표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상 공표 현황

- 주요 항목별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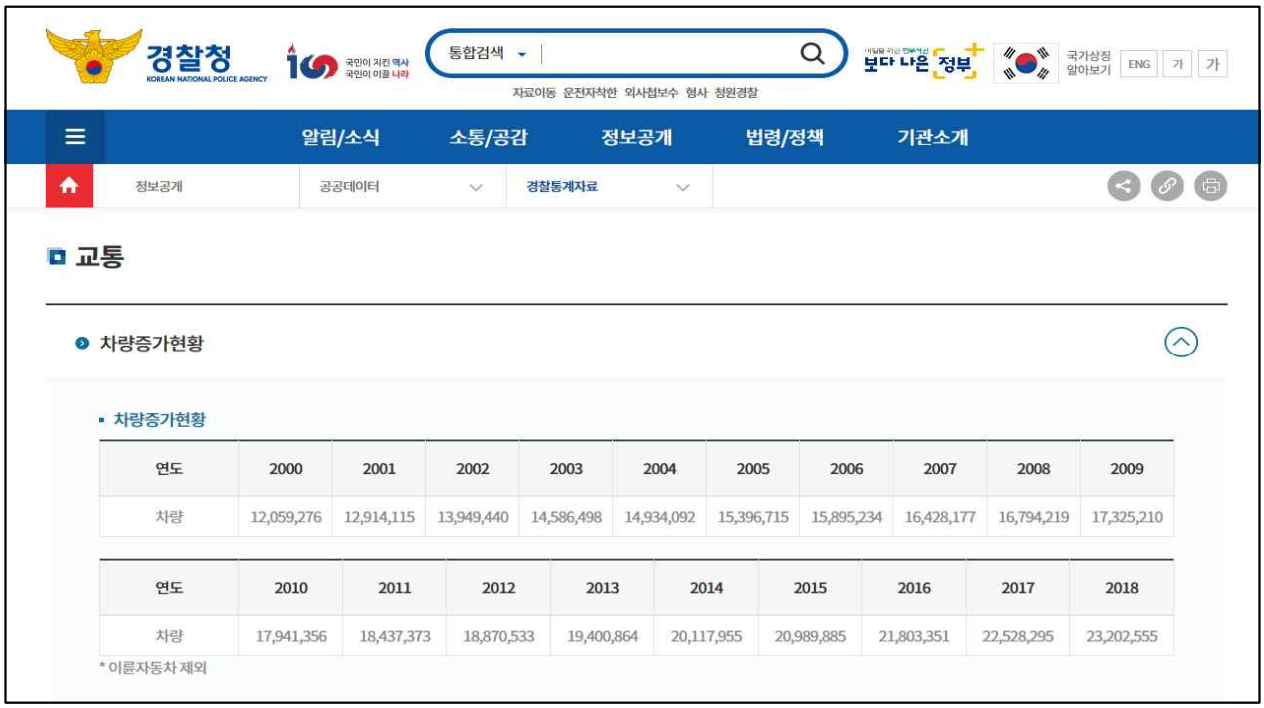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차량	12,059,276	12,914,115	13,949,440	14,586,498	14,934,092	15,396,715	15,895,234	16,428,177	16,794,219	17,325,210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차량	17,941,356	18,437,373	18,870,533	19,400,864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528,295	23,202,555

* 이륜자동차 제외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고(건)	230,953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217,148
사망(명)	7,224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부상(명)	348,184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361,871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350,400	331,720	322,829	323,037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통합검색

자료이동 운전자착한 외사첩보수 형사 청원경찰

보다 나은 정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ENG 가

알림/소식 소통/공감 정보공개 법령/정책 기관소개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 경찰통계자료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40,832 (100.0)	220,755 (100.0)	214,171 (100.0)	213,745 (100.0)	211,662 (100.0)	215,822 (100.0)	231,990 (100.0)	226,878 (100.0)	221,711 (100.0)	223,656 (100.0)	215,354 (100.0)	223,552 (100.0)	232,035 (100.0)	220,917 (100.0)	216,335 (100.0)	217,148 (100.0)
안전운전 불이행	142,323 (59.1)	126,766 (57.4)	121,532 (56.7)	118,329 (55.4)	115,976 (54.8)	118,791 (55.0)	126,340 (54.5)	125,082 (55.1)	123,744 (55.8)	125,391 (56.1)	121,402 (56.4)	126,329 (56.5)	130,551 (56.3)	124,399 (56.3)	121,322 (56.1)	121,797 (56.1)
중앙선 침범	16,959 (7.0)	14,909 (6.8)	14,616 (6.8)	14,507 (6.8)	14,262 (6.7)	13,653 (6.3)	14,327 (6.2)	14,071 (6.1)	12,931 (5.8)	13,018 (5.8)	12,324 (5.7)	12,092 (5.4)	11,998 (5.2)	10,712 (4.8)	10,184 (4.7)	9,559 (4.4)
과속	613 (0.3)	531 (0.2)	444 (0.2)	431 (0.2)	493 (0.2)	411 (0.2)	422 (0.2)	403 (0.2)	403 (0.2)	377 (0.2)	427 (0.2)	515 (0.2)	593 (0.3)	663 (0.3)	839 (0.4)	950 (0.4)
신호위반	24,650 (10.2)	22,870 (10.4)	23,270 (10.9)	25,167 (11.8)	25,624 (12.1)	26,436 (12.2)	27,582 (11.9)	25,963 (11.4)	24,504 (11.1)	25,307 (11.3)	24,425 (11.3)	25,702 (11.5)	26,511 (11.4)	24,408 (11.0)	24,358 (11.3)	24,725 (11.4)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17,610 (7.3)	16,532 (7.5)	17,784 (8.3)	17,444 (8.2)	16,268 (7.7)	15,617 (7.2)	17,145 (7.4)	16,206 (7.1)	15,172 (6.8)	14,721 (6.6)	14,407 (6.7)	14,341 (6.4)	14,671 (6.3)	14,671 (6.6)	14,229 (6.6)	14,064 (6.5)
안전거리미확보	15,431 (6.4)	15,362 (7.0)	21,021 (9.8)	21,533 (10.1)	21,698 (10.3)	21,984 (10.2)	24,554 (10.6)	23,126 (10.2)	22,315 (10.1)	22,275 (10.0)	20,106 (9.3)	20,678 (9.2)	21,708 (9.4)	20,660 (9.4)	20,053 (9.3)	20,453 (9.4)
기타	23,246 (9.7)	23,785 (10.8)	15,504 (7.2)	16,334 (7.6)	17,341 (8.2)	18,930 (8.8)	21,620 (9.3)	22,027 (9.7)	22,642 (10.2)>	22,567 (10.1)	22,263 (10.3)	23,895 (10.7)	26,003 (11.2)	25,404 (11.5)	25,350 (11.7)	25,600 (11.8)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통합검색

자료이동 운전자착한 외사첩보수 형사 청원경찰

보다 나은 정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ENG 가 가

알림/소식 소통/공감 정보공개 법령/정책 기관소개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 경찰통계자료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고(건)	24,983	31,227	25,150	26,460	29,990	28,416	26,873	28,207	28,641	28,461	29,093	26,589	24,043	24,399	19,769	19,517	19,381
사망(명)	907	1,113	875	910	920	991	969	898	781	733	815	727	592	583	481	439	346
부상(명)	42,316	55,230	44,522	48,153	54,255	51,370	48,497	50,797	51,364	51,135	52,345	47,711	42,772	42,880	34,423	33,364	32,952

▪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기준 : '18년말,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	특수차	기타
사고(건)	217,148	145,238	13,526	27,562	15,365	2,246	1,178	12,033
(구성비)	(100.0)	(66.9)	(6.2)	(12.7)	(7.1)	(1.0)	(0.5)	(5.5)
사망(명)	3,781	1,837	247	868	469	68	57	235
(구성비)	(100.0)	(48.6)	(6.5)	(23.0)	(12.4)	(1.8)	(1.5)	(6.2)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통합검색
보다 나은 정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ENG 가 가
자료이동 운전자착한 외사첩보수 형사 청원경찰
알림/소식 소통/공감 정보공개 법령/정책 기관소개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경찰통계자료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기준 : '18년말, 단위 : 명, %)

구분	계	횡단보도		차도통행중		보도 통행중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중	도로위		기타
		내	외	마주보고 통행중	등지고 통행중			작업중	놀이중	
사망자(비율)	1,487 (100.0)	344 (23.1)	518 (34.8)	61 (4.1)	126 (8.5)	20 (1.3)	59 (4.0)	26 (1.7)	2 (0.1)	331 (22.3)
부상자 (비율)	46,400 (100.0)	13,072 (28.2)	8,653 (18.6)	1,861 (4.0)	3,011 (6.5)	1,731 (3.7)	3,471 (7.5)	620 (1.3)	177 (0.4)	13,804 (29.8)

▪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현황

(기준 : '18년 말,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커브 · 곡각		직선		기타	
사고(구성비)	217,148	(100.0)	13,495	(6.2)	201,276	(92.7)	2,377	(1.1)
사망(구성비)	3,781	(100.0)	664	(17.6)	3,086	(81.6)	31	(0.8)
부상(구성비)	323,037	(100.0)	20,384	(6.3)	299,497	(92.7)	3,156	(1.0)
치사율	1.7		4.9		1.5		1.3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통합검색
보다 나은 정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ENG 가 가
자료이동 운전자착한 외사첩보수 형사 청원경찰
알림/소식 소통/공감 정보공개 법령/정책 기관소개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경찰통계자료

▪ 교통사고 야기도주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고 (전년대비)	19,367 (-15.8)	18,556 (-4.2)	18,440 (-0.6)	16,346 (-11.4)	14,655 (-10.4)	14,480 (-1.2)	12,684 (-12.4)	11,613 (-8.4)	12,666 (9.1)	11,845 (-6.5)	11,409 (-3.7)	11,452 (0.4)	9,604 (-16.1)	8,771 (-8.7)	9,513 (8.4)	8,326 (12.5)	7,883 (-5.3)	7,601 (-3.6)
사망(명)	549	506	472	387	370	360	340	297	298	279	284	234	219	207	157	151	150	107
부상(명)	26,572	26,066	27,035	24,075	22,231	22,660	20,057	18,373	20,275	19,016	17,951	18,261	15,247	13,622	14,388	12,274	11,433	11,099

▪ 교통사고 야기도주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고(건)	19,367	18,556	18,440	16,346	14,655	14,480	12,684	11,613	12,666	11,845	11,409	11,452	9,604	8,771	9,513	8,326	7,883	7,601
검거(건)	16,600	16,126	14,428	12,153	10,744	10,791	10,264	10,218	11,219	11,029	10,681	10,699	8,693	7,950	9,167	8,212	7,695	7,245
검거율(%)	85.7	86.9	78.2	74.4	73.3	74.5	80.9	88	88.6	93.1	93.6	93.4	90.5	90.6	96.4	98.6	97.6	95.3

- 당해연도 잠정 통계 5개 항목 게재

▪ 전체사고,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잠정)

(기준 : '2019년 1~3월말, 단위 : 건,명)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전체사고	49,479	751	73,731
어린이 (13세미만)	2,009	7	2,649
노인 (65세이상)	9,153	350	9,901

▪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기준 : '2019년 1~3월말, 단위 : 건,명)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	개인형 이동수단 (PM)	농기계	자전거	기타
사 고(건)	49,479	33,606	3,046	6,249	3,573	416	37	62	825	1,665
사 망(명)	751	391	39	194	76	6	1	12	9	23
부 상(명)	73,731	51,754	4,763	9,131	4,473	519	38	68	864	2,121

- 연도별 통계책자 각 장별 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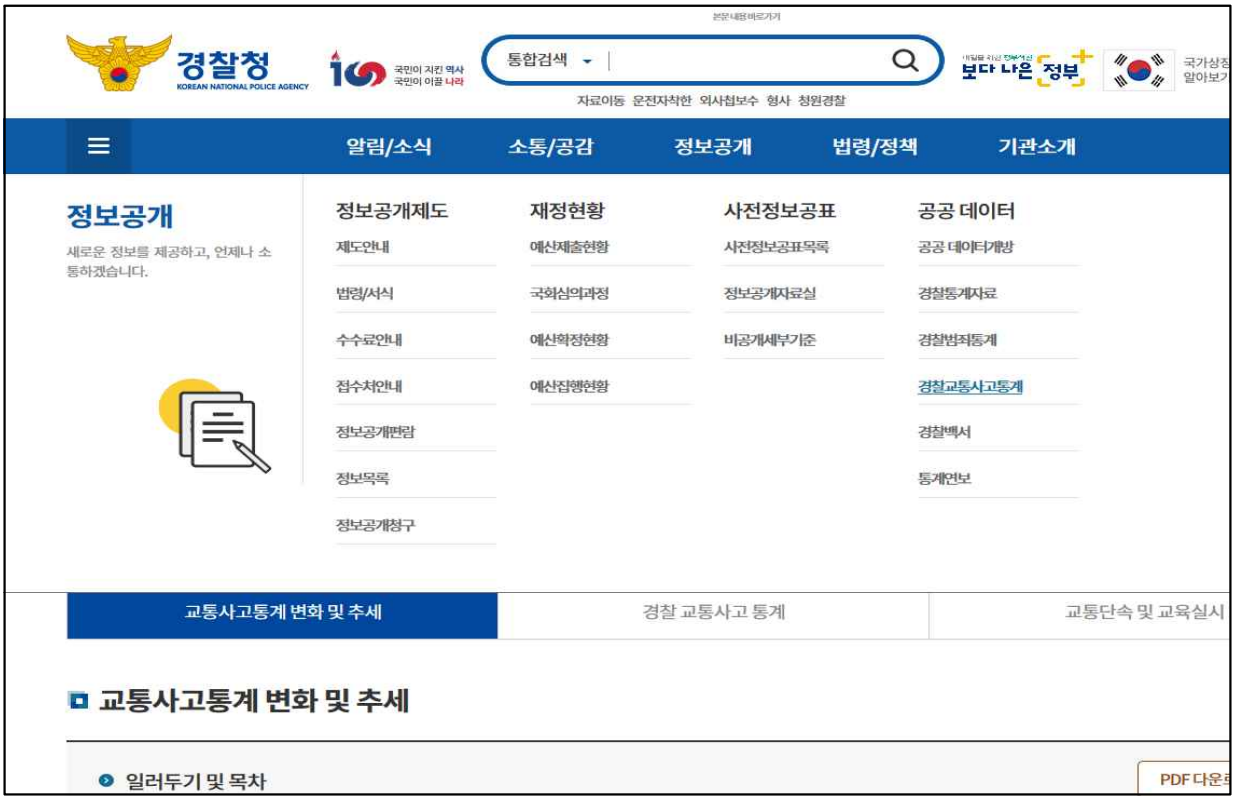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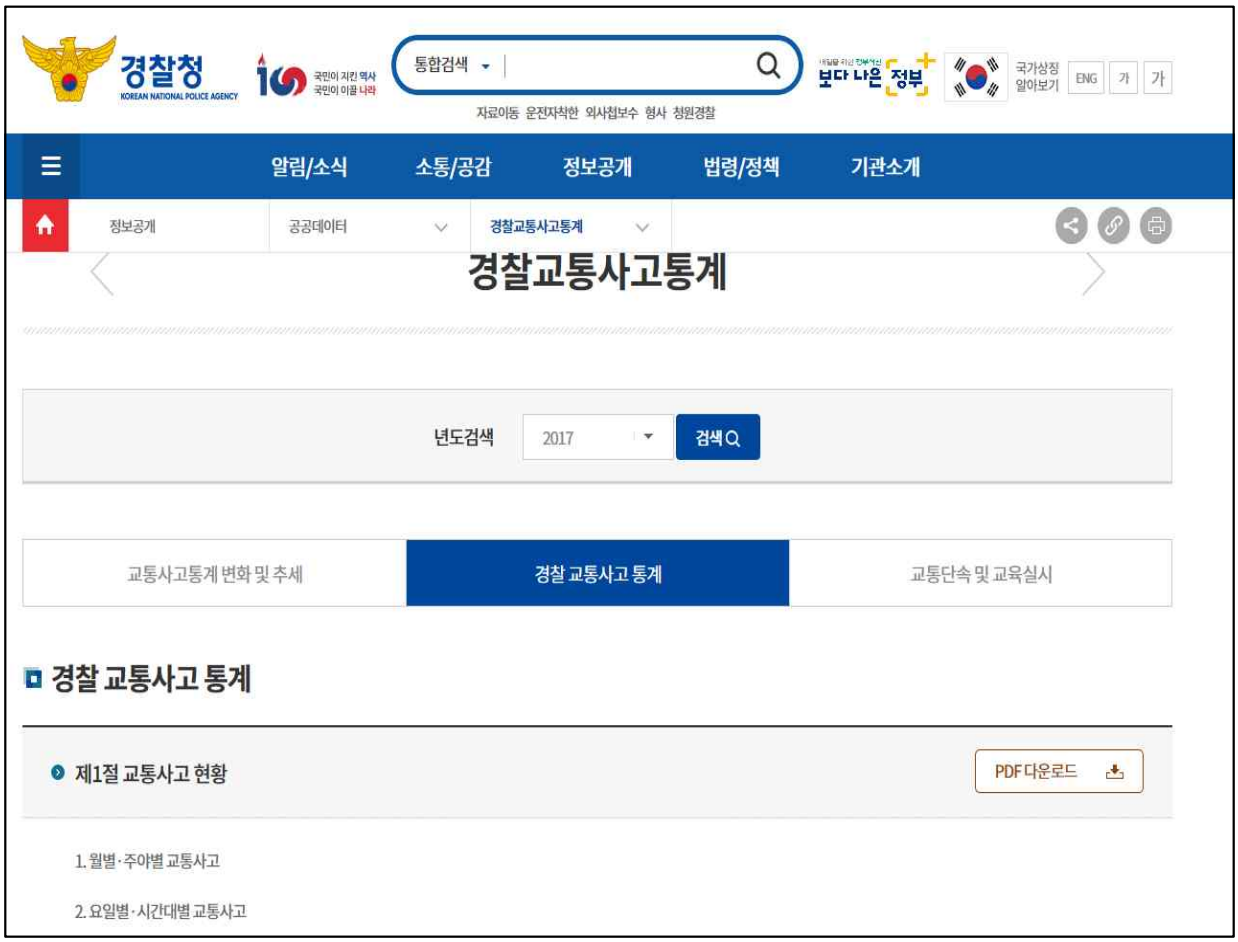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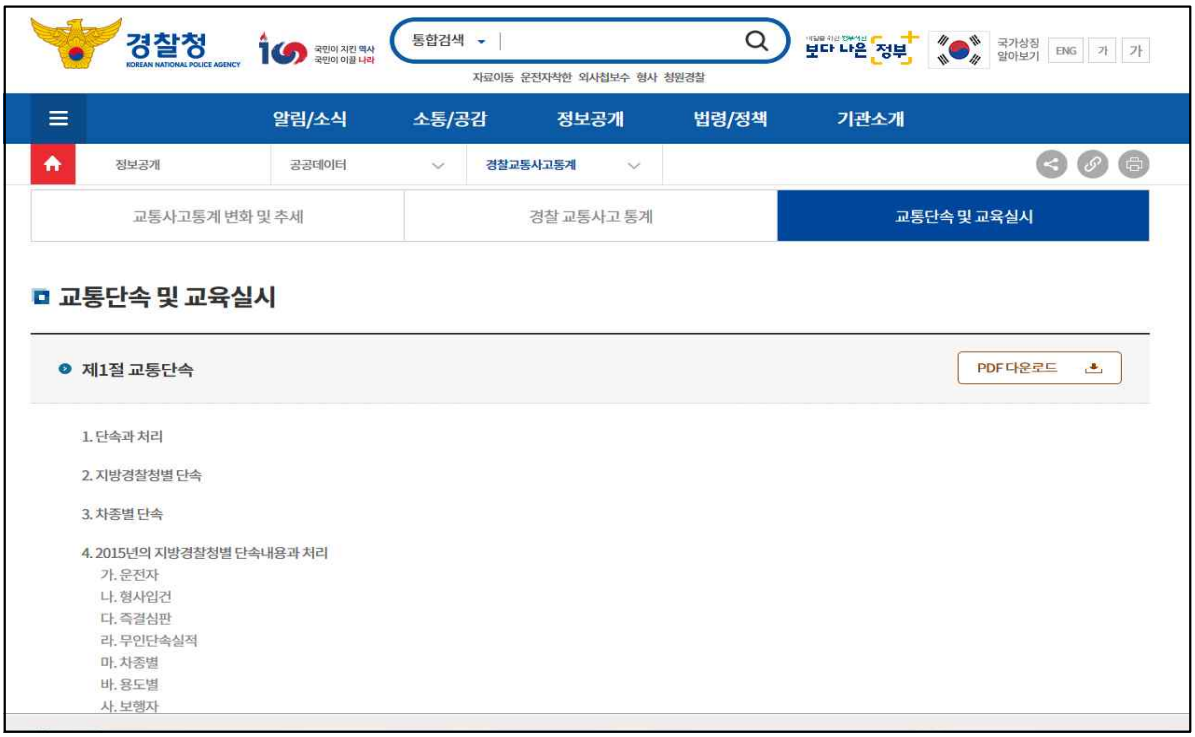

□ 교통사고발생현황 통계 20개 장표

○ 통계청 전송모듈을 통한 주요 교통사고통계 20종 통계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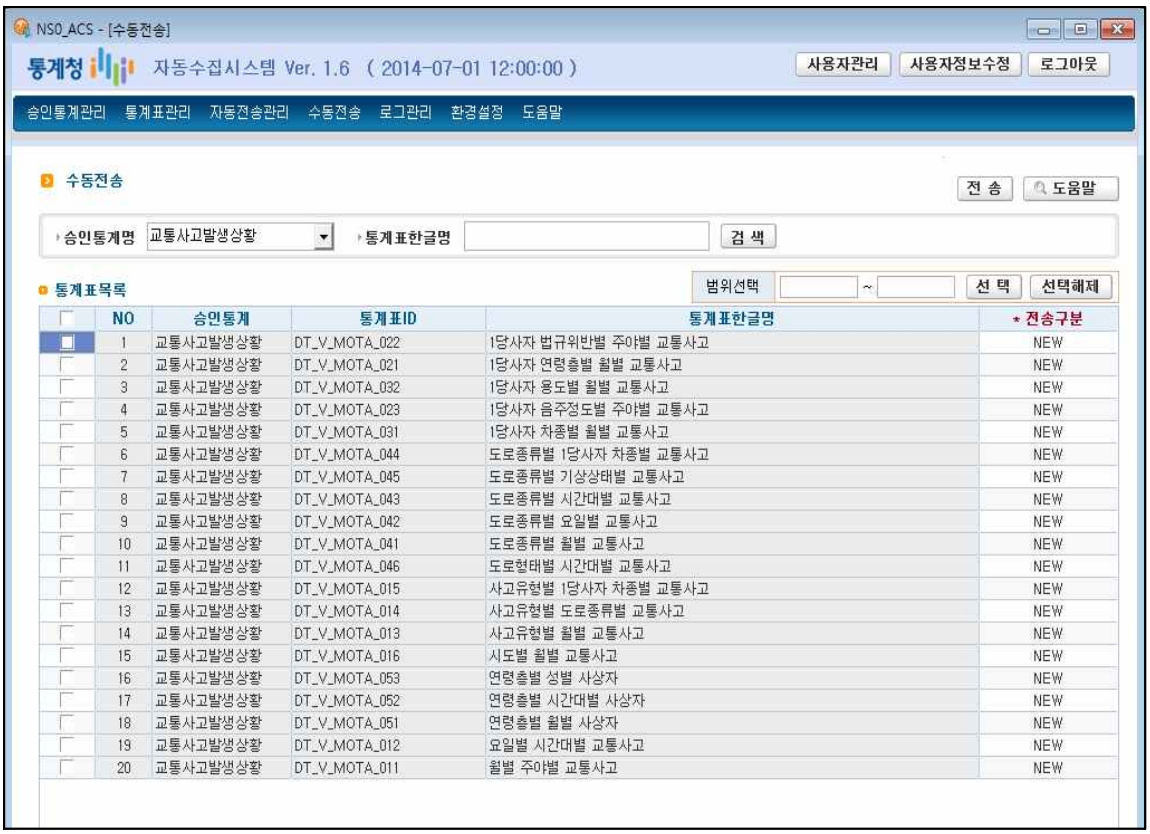

NO	승인통계	통계표ID	통계표한글명	* 전송구분
1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22	1당사자 법규위반별 주야별 교통사고	NEW
2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21	1당사자 연령층별 월별 교통사고	NEW
3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32	1당사자 용도별 월별 교통사고	NEW
4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23	1당사자 음주정도별 주야별 교통사고	NEW
5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31	1당사자 차종별 월별 교통사고	NEW
6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44	도로종류별 1당사자 차종별 교통사고	NEW
7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45	도로종류별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NEW
8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43	도로종류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NEW
9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42	도로종류별 요일별 교통사고	NEW
10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41	도로종류별 월별 교통사고	NEW
11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46	도로형태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NEW
12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15	사고유형별 1당사자 차종별 교통사고	NEW
13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14	사고유형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NEW
14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13	사고유형별 월별 교통사고	NEW
15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16	시도별 월별 교통사고	NEW
16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53	연령층별 성별 사상자	NEW
17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52	연령층별 시간대별 사상자	NEW
18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51	연령층별 월별 사상자	NEW
19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12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NEW
20	교통사고발생상황	DT_V_MOTA_011	월별 주야별 교통사고	NEW

○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한 주요 교통사고통계 정보 제공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http://taas.koroad.or.kr)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교통사고통계 기준시점

○ 교통사고통계는 01월01일~12월31일에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작성됨

□ 교통사고통계 공표시기

○ 교통사고정보 마감 및 오류 수정작업 이후 매년 4월경 공표

2-2. 공표일정

□ 교통사고통계 공표일정

○ 연간 교통사고 잠정통계 : 매년 3월 경

○ 연간 교통사고 확정통계 : 매년 4월 경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항목 제재

- 주요항목별 게재 : 매년 4월 경
- 연도별 교통사고 통계책자 게재 : 매년 8월 경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서비스 개시 : 매년 4월 경

* 통계청 통계연계는 통계구축 완료 후 통계검증 수행 후 전송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 교통사고 통계는 연도별 조사 처리된 자료와 비슷하여 통계 분석 가능함

□ 교통사고 통계 용어 변경

○ 배경

-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피해자구호, 교통질서회복 등 경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경찰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 처리
- 경찰에 '접수·처리된 사고건수'를 통계용어상 '발생건수'로 사용, 경찰통계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 통계라는 오인 야기
- 도로교통공단과 통합DB와 경찰이 사고통계에 '발생건수' 용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혼선 초래, 의미가 명확한 별도 용어 사용 필요

  ※ 도로교통공단 통합DB : 2010년, 전체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보험사 통계를 통합 구축

○ 용어변경

- 전체 교통사고 중 경찰에 접수·처리된 사고라고 통계 적용범위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통계표명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서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으로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교통사고 발생현황(사망, 부상)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 항목용어는 국제 표준에 부합되고 도로교통공단의 항목 용어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건)'에서 '사고건수'로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발생(건)	사고건수

※ 2014년 4. 17. 통계청 고시 제2014-208호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유무

○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 교통사고통계

○ OECD 산하 IRTAD*에서 교통안전 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각국의 교통사고자료 수집

- 국제적 교통사고 통계 수집 기준을 협의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함

*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Traffic Accident Database)

○ 경찰에 신고·접수된 교통사고가 공식 통계로 제공되며, 우리나라는 각국의 인구 및 차량보유 수준을 고려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산출하여 국가별 비교 보고서를 발간·배포 중임

○ 수집항목은 교통황경 및 사고 등 주요통계 15종을 제공하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

※ 국가별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외 항목은 비공개

○ 국가별로 잠정자료를 제출하고 향후에 확정자료로 수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 수집 시점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연도별 자료적용에 주의 필요

- 차량등록대수의 경우 연초(1/1), 연중(7/1), 연말(12/31) 등 국가별로 상이함

국제기구 연락창구	담당자 : ~~Susanne REICHWEIN (e-mail : irtad@irtad.net)~~ ~~Elene.Shatberashvili(e-mail : Elene.SHATBERASHVILI@itf-oecd.org)~~ Rachele POGGI(e-mail : Rachele.POGGI@itf-oecd.org) Veronique.FEYPELL(e-mail : Veronique.FEYPELL@itf-oecd.org)
제공현황	내 용
	1. 인구
	2. 자동차 등록대수
	3. 도로연장
	4. 교통관련 일반자료(국토면적, 수송분담률 등)
	5. 연령별 사망자
	6. 성별사망자
	7. 연령별/차량동승상태별 사망자
	8. 연령별/도로이용상태별 사상자
	9. 도로이용상태별 사망자
	10.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11. 차종별/도로종류별 교통사고
	12. 월별 교통사고
	13.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14.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15. 안전벨트 착용률 등 도로환경요인
	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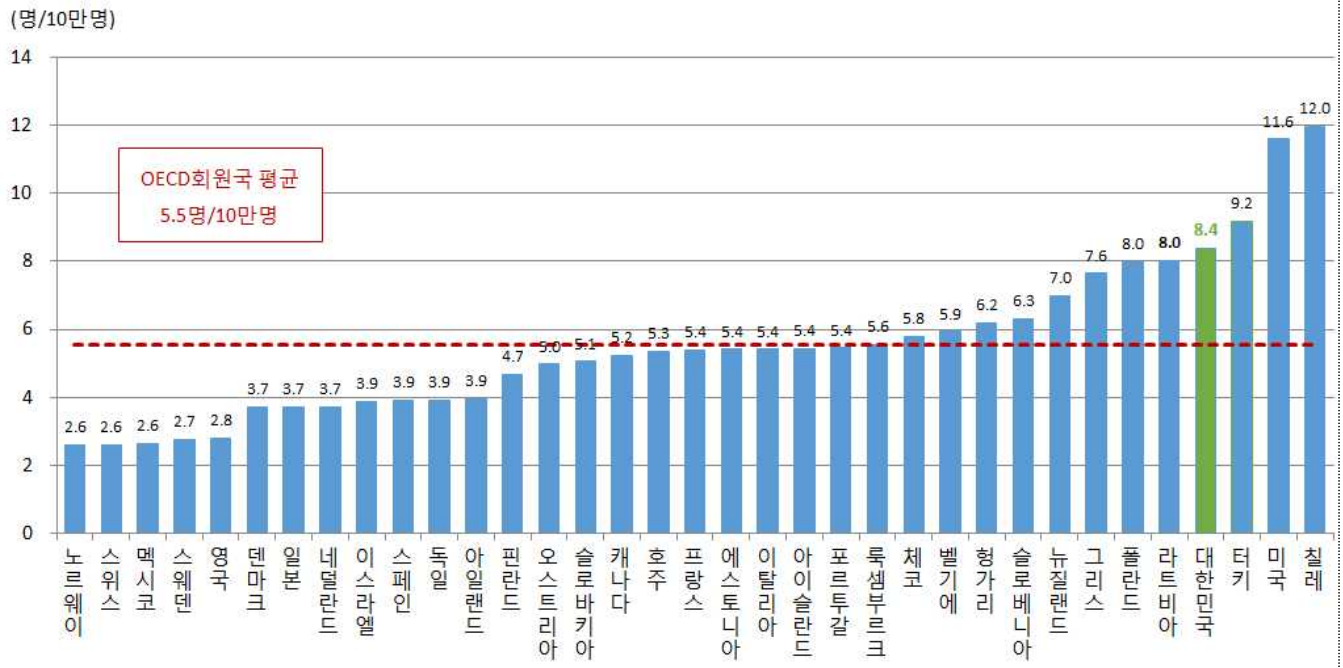

주 : *2016년도 인구통계가 없는 국가, 2000년 이후 가장 최근 연도 인구자료 적용(2p, 표I-1참고)
자료 : http://stats.oecd.org
※ OECD 회원국 평균은 국가간 지표의 산술평균을 적용함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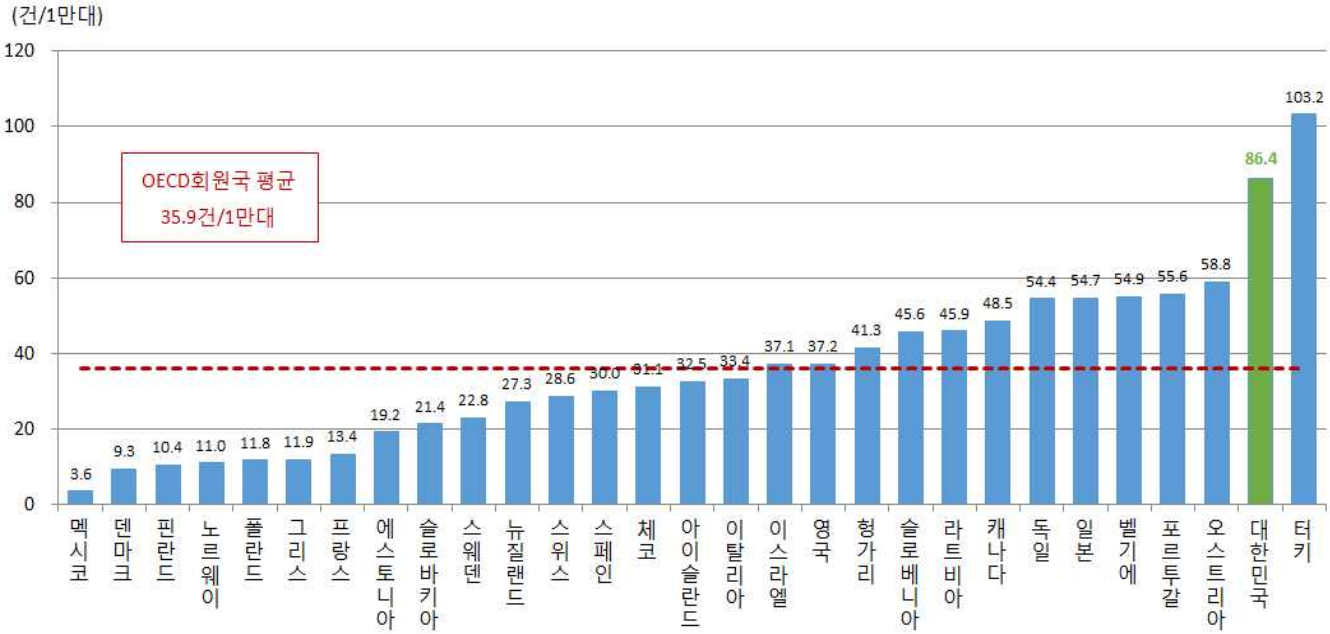

자료 : http://stats.oecd.org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내 통합DB를 구축

○ 경찰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외 손해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접수되는 교통사고통계를 통합하여 통합DB를 구축

- 경찰・손해보험사(11개)・공제조합(6개)의 교통사고 원시데이터를 수집한 뒤 중복정제하여 일관된 통계를 구축

5. 통계활용 실태

□ 도로교통공단 운영의 교통사고통계정보 웹사이트(교통사고분석시스템) 접속현황

○ 연도별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접속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가율(%)
접속(건)	122,011	153,644	175,276	+ 14.1%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통계작성 기본계획 : 없음

○ 업무편람 :『교통사고 통계』

○ 자료수집 방법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경찰에 접수처리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입력

○ 공표자료 제공방법 : 관련 웹사이트에 등재 및 교통사고 통계책자 발간

- 인터넷 공표 현황

공표장소	홈페이지
경찰청	https://www.police.go.k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www.kosis.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o.kr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 교통사고 통계 : 익년 7~8월 경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인터넷 경로

인터넷 주소	제공자료
경찰청 https://www.police.go.k	경찰통계자료, 교통사고 통계책자 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www.kosis.kr	연도별, 사고유형별, 도로종류별, 도로형태별, 요일별 등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go.kr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2-2.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통계 메타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 도로교통공단 포털(www.koroad.or.kr)

○ 통계 설명자료

- e-나라지표(www.index.go.kr)
-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도로교통공단 포털(www.koroad.or.kr)

3.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마이크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상(openAPI)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통계 데이터에 정보제공 가능
- 사망 교통사고 마이크로데이터 openAPI 및 CSV로 제공 중
  2012년 이후 접수 된 교통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openAPI와 CSV파일 형태로 제공중임
- 제공중인 마이크로 데이터 상세항목

항목명(국문)	항목설명
발생년	발생년
발생월일	발생월일
발생시간	발생시간
주야구분코드	주야구분코드
사고요일코드	사고요일코드
사망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부상신고자수
발생지시도코드	발생지시도코드
발생지시군구코드	발생지시군구코드
사고유형대분류코드	사고유형대분류코드
사고유형중분류코드	사고유형중분류코드
사고유형코드	사고유형코드
법규위반(1당)대분류코드	법규위반(1당)대분류코드
법규위반(1당)중분류코드	법규위반(1당)중분류코드
도로형태대분류코드	도로형태대분류코드
도로형태코드	도로형태코드
당사자종별(1당)대분류코드	당사자종별(1당)대분류코드
당사자종별(1당)코드	당사자종별(1당)코드
당사자종별(2당)대분류코드	당사자종별(2당)대분류코드
당사자종별(2당)코드	당사자종별(2당)코드

○ 정보공개 청구 및 공공데이터 포털 소요시간 및 비용

- 정보공개 청구 및 공공데이터 포털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공이 되며, 제공되는 데이

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비용 책정

- 자료제공

청구 자료는 엑셀, hwp,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번호

○ 교통사고 정보(조사) 수집

-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처리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사고처리 정보자료(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수집함

○ 자료 처리과정

- 교통사고 조사 처리된 교통사고 정보 관련 자료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고 있으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이전에는 2003년부터 운영된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을 통해서 처리하였음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 교통경찰 행정업무를 전산화(DB화) 시키면서 각 업무기능별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web 기반으로 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교통경찰의 모든 행정업무(면허, 행정처분, 단속, 사고, 운전학원, 도로공사, 각종 교통 관련 통계)와 법령 및 판례, 기능별 업무처리지침·질의회시·사용자 매뉴얼 등을 메인화면에서 바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자료 보관과정

- 집계된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개인 식별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음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식별 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의 통계원표 항목에는 개인정보가 있으나, 공표 시 개인정보 등은 공표하지 않고 있음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입력된 교통사고조사보고서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음

○ 매년 마감된 교통사고 통계원표 raw-data를 산하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직접제공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통합db 자료 정제후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고 있음

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통계업무 당담 : 경찰청 2명, 17개 지방청별 1명

□ 최근 3년 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현황

연 도	교육기관	과정명	참여인원
2016	통 계 청	통계기초 및 활용(2기) 교육	1
2016	통 계 청	2016년 상반기 자체통계 품질진단 교육	1
2017	통 계 청	2017년 하반기 자체통계 품질진단 교육	1
2017	통 계 청	spss 통계활용(2기) 교육	1
2019	통 계 청	2019년 정기품질진단 교육	1

2. 사업예산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 총 예산 : 미 정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유지보수 예산 9억5,760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2018. 4. 1. ~ 2019. 3. 31(12개월)

※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관련 예산은 미정

○ 예산증액의 필요성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교통사고 관련 유지보수 지속 및 통계원표 개선 추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 확보 필요

3. 자료처리 시스템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 2003년부터 운용해오던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를 2012년 3월부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통합하여 교통경찰업무를 전산화 DB화 하여 교통경찰의 모든 행정업무(면허, 행정처분, 단속, 사고, 운전학원, 각종 통계 관련)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포르그램임

- 시스템 명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 유지보수 : 외부용역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품질 관리

○ 교통사고 통계 입력 실태 점검

- 2018년 3월말 교통사고 통계항목 수정 지시(2018. 7. 20.)
- 2018년 9월말 교통사고 위치정보 불일치 확인 지시(2018. 12. 24.)
- 2018년 10월말 교통사고 통계항목 수정 지시(2018. 11. 26.)
- 2018년 11월말 교통사고 위치정보 불일치 확인 지시(2019. 1. 14.)
- 2018년 12월말 통계원표 에러 현황 등 수정 지시(2019. 1. 29.)
- 2018년 12월말 교통사고 통계 항목 수정 지시(2019. 2. 14.)

○ 교통사고 통계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연번	일 시	내 용	대 상 자
1	2018. 4. 24.	교통사고 통계 관련 교육	지방청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2	2018. 12. 13.	교통사고 통계원표 개선 관련 지방청 의견 수렴	지방청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3	2019. 6. 13.	교통사고 통계 활용방법 및 추출방법 등	지방청 교통사고 통계담당자

○ 통계 분류항목 개선

-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피해자구호, 교통질서회복 등 경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경찰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 처리 진행
- 교통사고통계·경찰백서 책자 등에서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통계 용어로 '발생건수'를 사용, 전체 교통사고 통계라는 오해 소지가 되어 용어 변경

통계표명	< 변경 전 >	< 변경 후 >
	교통사고 발생현황(사망, 부상)	경찰접수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통계항목	발생(건)	사고건수 ※ 주석에 '경찰에서 접수·처리하는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라고 명기

- 2014. 7. 17. 통계청 고시 제2014-208호

Ⅹ.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교통사고통계 관련 데이터 정의 관련 자료

○ (문서) IRTAD Special Report, Definitions and Data Availability

- 교통사고 통계 정의 및 수집 기준 등에 대한 내용 수록

○ (인터넷주소) https://www.itf-oecd.org/irtad-road-safety-database

- 자료수집기관(OECD-IRTAD) 소개 및 수집항목 등 기술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웹서비스제공) https://stats.oecd.org / Transport / IRTAD database

- 국가별로 교통사고정보 웹서비스(연령별 사망자 정보 외 비공개)

○ (보고서발간) https://www.itf-oecd.org/road-safety-annual-report-2018

- 연도별 수집된 국가별 교통사고정보 분석 보고서(OECD)